

第五篇 大韓民國臨時政府와 警察

第一章 3·1大運動과 臨政樹立

一. 3·1大運動의 意義(民族主權의 表示)

隆熙 4年(1910) 8月 29日 强要된 한 조각의 所謂「併合」條約으로 日帝의 武斷支配속에 들어간 우리 韓民族은 政府敘는百姓이 되어 버렸다. 保護條約 以後의 抗日義兵活動은 그들이 거의 平定시켰다고 하는 1911年까지 滿 5年餘 全國各地에서 日軍과 憲兵을 奔命에 몰아 넣어 이는 可히 韓日戰爭이라고 할만하였다.

그러나 優秀한 武器와 訓練된 正規軍인 日帝의 軍隊 앞에 이미 大勢가 기우러 갔음은 否認할道理가 없고 1915年까지는 중적을 감추다 시피하였다.

그리고 獨立義軍府組織이니 光復會組織이 있었으나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一方 日帝는 志士들의豫備檢束策으로 所謂 總督暗殺未遂事件이라는 것을 날조하여 主로 新民會系統의 6~700人을 검거하였다. 그 중 120餘人을 起訴한 이 105人事件은 調查에 1年半을 넘어 起訴되기까지 모두 酷毒한 拷問으로 半廢人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일이 있자 國內에서는 거의 積極的反抗運動이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獨立運動의主流는 海外로 亡命한 志士들에 의해 海外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日帝의 韓國統治는 一段 成功하는 듯한 印象을 풍겨 그들에게 한갓 自慢心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第一次世界大戰이 끝나면서 1919年 3月 1일에 우리 民族의 舉族的인 “大韓獨立萬歲”運動이 더져 自慢心에 빠진 日帝를 깜짝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韓國의 獨立」이란 우리民族自體의 固有의 權利이요, 또한 東洋平和를 為해서도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從來의 儒生이나 義兵들의 救國闘爭은 그 人員數가 亦是 制限된 것이었고 當時의 文化水準이 선비와 이에 感化를 입은 一部百姓에게만 意識의이고 積極의인 武裝救國運動에 나서게 하였으나 民族意識과 獨立要望은 漸次 下部層으로 擴散되어 日帝에 毒殺된 高宗의 葬日을 前後하여 舉族의 萬歲大運動으로 퍼졌던 것이다.

이 獨立萬歲示威는 韩民族 主權의 宣言이오 決코 韩民族은 日帝의 不法支配에 承服하지 않겠다는 民衆의 意思表示인 것이다. 實로 이것은 日帝로 하여금 武裝抗日戰을 벌였던 義兵을 平定했던 총칼로 이제는 韩民族의 마음속을支配할 수는 없다고 깨닫게 한 絶對的契機를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意義의 더 큰 것은 이로써 그 間 滿 8年半 동안 空白으로 비어있던 우리의 政府가 비록 “臨時”라는 形容詞는 붙었을 망정 비로소 樹立됐다는 데 있다.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이 萬歲示威를 契機로 세워서 韩民族의 國家史는 이어지고 主權의 行使

處가 마련케 되었다. (여기에 本書에서 此章을 「章」으로 하고 日帝總督府時代를 附錄으로 編한 理由가 있다).

舉族的인 獨立萬歲示威는 指導者들에 依해 “民族의 獨立意思表示”로 解釋되어 臨時政府를 세우는 根據를 提供하였다.

그것은 다음에 실리는 各段階 臨時政府憲章에 前文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言及이 있으며 現今의 各段階 憲法 前文에도 第一次的 建國의 精神의 源流으로 表示하고 있는 理由이다.

人民의 意思는 明文憲法에 앞서고 人民은 가장 正當한 憲法制定權力이다. 男女老少·學生·勞動者·母子까지 나선 이 巨大한 獨立意思表示는 人民에 依하여 要求表示되었으므로 日帝에게 敗亡한 君主國家인 大韓帝國의 復舊는 있을 수 없고 새로운 國家와 政府形態는 當然히 民主共和國體制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必然의 結論이오 따라서 3·1民衆示威는 君主專制에서 民主共和의 民主主義革命運動의 性格을 가지며 國家와 政府를 마련하자는 自然法의 人民契約論을 實演한 世界史의 好箇의 例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 運動은 國債報償運動이나 6·10萬歲運動·“부·나로드”運動·國產品獎勵運動 및 中國의 五·四運動類와는 그 次元을 달리 하여 그 區別을 為해서는 「3·1大運動」이라고 부를 만하다.

우리의 臨時政府는 3月 下旬에서 4月 사이에 露領과 中國上海 및 美國 워싱턴(漢城政府)에相互連絡不足으로 階立하였다가 9月에 가서는 合同이 끝나 單一政府로 그 位置를 中國上海의 佛租界에 잡았다.

그리고 政府組織 속에 簡素하나마 警察組織으로 內務部에 警務局을 두고 또한 오래 가지는 못하였으나 國內 各地方에 道·府·郡 및 面에 걸쳐서 警察官을 指命하였다.

二. 3·1大運動의 概要

3·1大運動의 具體的 經路는 美洲와 中國에 있는 僑胞社會에서 日本을 거쳐 國내로 잡을 수도 있다.勿論 國內의 境遇는 獨自의 計劃에 依한 것이나 日字順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經路를 說明하는 것도 國内外의 韓民族社會에 걸쳐서 일어난 이 大運動을 把握하기가 容易한 點이 있다. 이 方式에 依하여 3·1大運動의 大要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1918年 年頭敘書에서 美國의 윌슨大統領은 一次世界大戰의 終戰方案으로 民族自決原則을 包含한 有名한 “14箇條項”을 發表하였다. 이것은 이해 10月 獨逸의 降伏과 함께 바로 美洲 僑胞社會에 敏感히 反映되어 美洲에서는 翌年에 열릴 巴里講和會議에 民族代表를 派遣하기로 하였는데 이 消息은 그 費用으로 三千金이 이미 募金되었다는 報道가 이해 年末 日本橫濱에서 發行되는 “재판·크로니클”(英字新聞)誌에 실렸다. 代表는 李承晚·鄭翰慶·閔贊鎬의 3名이었다. 이 記事が 日本의 青山學院留學生에 依해서 그들의 教授집에서 發見되었다. 이것이 日本留學生들의 “2·8獨立宣言”이 敵都 東京 YMCA會館에서 열리게 된 큰 契機가 되었다.

또한 中國上海에서는 同濟社 理事長인 申圭植이 趙素昂과 張德秀를 日本留學生 社會에 派遣하

였고 同時에 金奎植을 講和會議 代表로 巴里로 떠나 보냈으며 巴里에서의 金代表의 國際的 活躍을 衝擊的인 民衆運動으로 뒷 받침하려는 意圖에서 國내와 滿洲 等에도 說得使를 派遣하였다.

國內에는 1月 中에 日本留學生의 密使(宋繼百)가 들어왔고 또한 李承晚의 密托이 宣教師 “사탁스”를 通하여 傳達되었다.

그러나 國內에서도 自體的인 運動計劃이 天道教의 孫秉熙 中心으로 進行되었다.

이때 마침 高宗의 毒殺所聞이 國내에 퍼져 民族自決主義의 影響과 함께 日帝에 對한 敵愾心은 더욱 불탔던 것이다(民族自決主義는 國內外의 有識層에 依해서 敗戰國의 植民地에 該當되는 것 이지 獨逸에 宣戰했던 日本의 植民地에 該當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으나 何如든 民族의 意思를 表現할 契機는 이때 밖에 없다고 斷定되었던 것이다)[註·1].

3月 2日의 高宗의 因山日을 하루 앞둔 3月 1日 正午가 “D 데이 · H 아우어”로 決定되었던 것은 마침 高宗因山에 參禮코자 각 地方民이 서울로 雲集한 機會가 利用된 것이다.

3·1大運動은 日帝彈壓下에 團體로서 韓國人에게 마지 막으로 許容되었던 三大宗教團體(天道教·基督教 및 佛教)와 教育機關의 學生들에 依하여 推進되었다.

全國의인 示威는 3·4月에 集中的으로 展開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他書[註·2]에 讓步하기로 한다.

그에 關한 統計는 日帝의 것이 많이 있으나 이 運動自體를 過少評價하려는 그들의 基本政策 때문에 믿을 수 없으니 朴殷植著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실린 것으로 大觀해 보면 다음과 같다.

統 計 表(自 3月 1日—至 5月末日間)

1.	府 郡 數	211
2.	會 集 回 數	1,542
3.	會 集 人 數	2,023,098
4.	死 亡 人 數	7,509
5.	被 傷 者 數	15,961
6.	被 囚 者 數	46,948
7.	毀 燒 教 堂 數	47
8.	毀 燒 學 堂 數	2
9.	毀 燒 民 戶 數	715

三. 大韓民國臨時政府 樹立과 憲政[註·3]

舉族의인 集中示威는 原則的으로 平和的인 맨 주먹 運動이기 때문에 日帝의 本土로부터 增強된 軍隊와 警察에 依하여 鎮壓되었으며 그들의 殘忍한 報復으로 시들고 말았으나, 이를 民族의

註 1) 李普衍, 「3·1運動에 있어서의 民族自決主義의 導入과 理解」東亞日報社刊「3·1運動 50周年 紀念論集」

註 2) 朴賢緒·金良善·安啓賢·許善道·金大商 諸氏의 東亞日報社 同上 所揭 諸論文

註 3) 洪淳鉉「上海臨時政府의 正統化過程」新東亞 1968. 3

獨立을 頑하는 意思로 看做하여 國際的으로는 獨立呼訴와 外交交涉의 單位로, 國內的으로는 獨立運動團體의 總指揮塔으로 臨時政府樹立運動이 벌어졌다.

그러나 政府는 하나가 서야 할텐데 相互連絡不足의 탓인지 세 個의 臨時政府(大韓國民議會·上海臨時政府·漢城政府)가 서고, 그 外에 빼라政府로 「朝鮮民國 臨時政府」와 「新韓民國政府」가 있었다.

그러나 大韓國民議會(露領)은 上海臨時政府와의 交涉中 解消되고 9月에 上海議政院에서 漢城政府와 上海臨時政府가 一體化되었다.

이로서 單一政府가 樹立되어 韓國獨立運動線上에 正統政府로 君臨하게 되었다. 以下 各 政府에 對해서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漢城政府

民族代表 33人은 政治學의 으로 政府의 存在이나 이들은 投獄되어 그들 以外의 指導者들에 依하여 13道國民大會(制憲議會 性格)가 秘密裡에 準備되어 4月 23日 舉事日에 未遂로 그 關係者가 逮捕되었으나 이미 準備된 印刷物이 一部 配布되어 世稱 漢城政府가 聯合通信에 報道되어 世間에 알려지고 여기에서 執政官總裁로 指名된 在美 李承晚은 決議에 따라 美國首都 워싱턴에 執政官總裁事務室을 開設하였다. 이에 關한 記錄은 다음과 같다.

漢城國民大會 決議事項

(1) 出席 13道代表 氏名(略)

(2) 決議事項(略)

(3) 幹部選定(=閣僚名單)

(4) 巴里構和會議에 出席할 名單(略)

(5) 約法

第 1 條 國體는 民主制를 採用함

第 2 條 政體는 代議制를 採用함

第 3 條 國是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尊重하고 世界平和의 幸運을 增進함

第 4 條 臨時政府는 左의 權限이 있다.

1. 一切 內政

1. 一切 外政

第 5 條 朝鮮國民은 左의 義務가 있다.

1. 納稅

1. 兵役

第 6 條 本 約法은 正式 國會를 召集하여 憲法을 頒布할 때까지 이를 通用함

(6) 一般民衆의 遵守할 要件(略)

(7) 北美合衆國內 臨時事務所 位置

The Portland 14St. Vermont Ave
Washington D.C. U.S.A.

大韓民國議會=露額

漢城政府에 앞서 이해 3月에 “우라지보스톡”의 新韓村에서는 韓人들이 韓族會中央總會를 「大韓民國議會」로 改編하여 巴里媾和會議에 代表를 派遣하기로 決議했고, 3月 17일에는 獨立宣言書를 頒布하였으며, 21일에는 5箇項의 決議文과 閣僚名單을 發表하였다. 그러나 孫秉熙를 大統領으로, 李承晚을 國務總理로 한 이 閣僚들은 行政府를 發足시키지 않았다.

上海臨時政府=中國

中國의 上海는 外國의 租界가 있고 또한 交通上 東洋에서 가장 便利한 地利가 있어 3·1舉事前 海外連絡을 맡은 基督敎界에서 獨立請願書를 美大統領과 傷和會議에 傳達케 하고자 玄楯牧師를 上海에 보내 놓고 3·1舉事日에 金智煥을 시켜 獨立請願書 關係文書를 滿洲 安東에 가서 玄楯에게 郵送토록 하였다.

上海에는 元來 舊韓國軍人 申圭植等이 渡來하여 佛租界에 터를 둘아 同濟社를 組織하여 獨立運動을 하고 있어, 이때까지 約 3百名의 儒民이 있었다가 3月 以後 中國 및 露領各地와 國內에서 志士들이 뭉여들여 700에서 1,000을 헤아리게 되어 臨時政府樹立運動이 가장 活潑히 進行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는前述한 바와 같이 이미 金奎植을 巴里에 보내 놓고 國內·日本·滿洲 等地에 舉事說得使를 보내 놓고 있던 곳이다.

여기에서 臨時政府가樹立되기는 漢城政府보다 約 2週를 앞선 4月 10—11일의 일이다. 議政院(立法府)를 設立하고 여기에서 大韓民國臨時憲章을 議決하고, 國務院(行政府)을 組織하여 國務總理에 李承晚을 指名하고 있었다. 行政府의 閣僚級은 李始榮을 除外하고는 海外各地에 散在하여 바로 就任치 않았으나 現地에 있는 次長級으로 行政府를 構成하여 議政院 對 國務院의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장 活動的인 臨時政府가樹立되고 있었다. 國號를 大韓民國, 年號도 大韓民國으로 定한 이 政府의 憲章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 臨時憲章 宣佈文

神人一致中外協應하여 漢城에 義를 起한 以來 30有日間에 平和的 獨立을 3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義로써 完全히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 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를 我子孫黎民에게 世傳하기 為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서 臨時憲章을 宣佈함.

大韓民國 臨時憲章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여 此를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 及 貧富의 階級 陞이 一切 平等으로 함.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住所移轉 身體 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資格이 有한 者는 選舉 及 被選舉權을 有함.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教育 納稅 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第7條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고 나아가 人類文化 及 平和에 貢獻하기 위하여 國際聯盟에 加入함.

第8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第9條 生命刑 身體刑 及 公娼制를 全廢함.

第10條 臨時政府는 國土恢復 後 滿 1個年 內에 國會를 召集함.

大韓民國元年 4月 日

臨時議政院議長	李	東	寧
臨時政府國務總理	李	承	晚
內務總長	安	昌	浩
外務總長	金	圭	植
法務總長	李	始	榮
財務總長	崔	在	亨
軍務總長	李	東	輝
交通總長	文	昌	範

(그리고 宣警文과 政綱을 發함)

諸政府의 統合과 大統領制憲法

그런데 이와 같이 政府가 相互連絡 不便으로나마 複數로 存在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었다. 이의 통합작업은 各地 海外僑胞를 망라하려고 美州에서 發起되었던 大韓國民會가 3月 10日에야 본국의 3·1운동소식을 전해 듣고 3月 15日 美州·하와이의 전대표회의를 열고 독립운동의 촉진차 각지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하고, 安昌浩(當時 同會 中央總會長)는 遠東地方派遣員이 되어 4月 5日 출발하여 도중에서 상해 정부의 第2席內務總長으로 임명된 것을 알고 취임을 주저하다가 결국 內務總長 (李承晚 總理는 위상톤에 체재하므로 종리대리가 되는 것임)으로 就任한 (6月 28日) 이후 具體化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露領의 國民의회를 元世勲을 통하여 上海정부와의 통합을 교섭하하여 와 議政院에서 상당히 유연한 태협책이 여러번 강구되어 왔었는데, 安總理代理는 玄楯을 國民의회에 特使로 보내어, 李東輝를 설득하여 결국 國民의회를 해산시키는데 예상외로 쉽게 성공하고, 李東輝마저 상해로 모셔오는 데 성공함으로써 (9月 18日) 남어지 문제는 漢城政府와의 통합문제였다.

그런데 漢城政府는 연합통신으로 그 성립소식이 세계에 퍼졌고 (上海政府는 玄循의 電報로 弘報되었었음)해서 兩政府間에는 어떤 결말이 나야만 되게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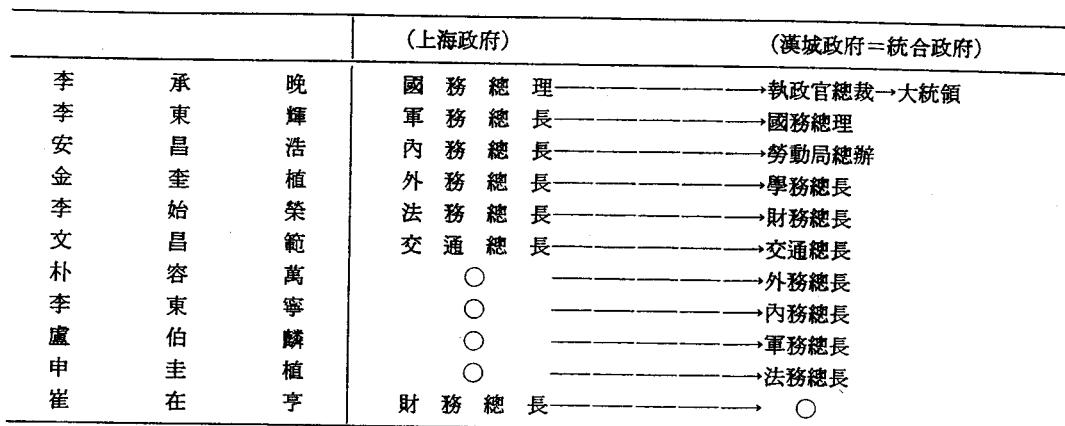
그러나 漢城政府는 議會가 없었고 다만 교섭대상이라야 美京에 사무소를 차린 李承晚 執政官

總裁인데 사실상 上海政府(議政院과 行政府)의 규모에 비하여 劣勢하기 짝이 없었다.

사무소에 태극기도 달고 “프렌지멘트”라고 칭하여 대외적으로 行勢하였지만, 그 밑에 總長 하나 次長 하나 인솔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上海政府機構로도 首班인 國務總理로 되어 있기 때문에 李承晚의 태도만 결정하면 통합은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安昌浩政府(名儀는 李承晚政府)는 議政院에 상해의 행정기구를 사실상 한성정부식으로 고쳐 조직과 인사문제를 통일시키는 안을 제출하였다.

閣僚人事問題는 사실상 상해정부 각료는 財務總長 崔在亨 以外는 모두 한성정부 각료로 임명되어 있는 터라 큰 희생이 없는 것이었다. 이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法務總長 李始榮은 辞任하여 南亨祐·申翼熙가 歷任하였음)

그리고 首班의 稱號에 있어서만은 집정판총재를 대통령으로 고치도록 되었는데 그 이유는 李承晚이 대외적으로 “프레지멘트”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 시키기 위한 安昌浩政府의 용의주도한 안이었고, 그 외 섭섭한 점은 이 통합의 공로자 安昌浩가 內務總長, 上海政府에서 崔在亨一人을 잃되 朴容萬·李東寧·盧伯麟·申圭植·李始榮 5人을 더 얻는 利點도 있었다.

(元來 諸政府가 發表한 閣僚名單은 現地人 中心으로 한 것이 아니라 當時의 海內外에 알려졌던 獨立運動界의 名士를 美州·中國·露領·國內의 地域을 若干 接配한 氣色이 보이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點이 많아 李承晚·安昌浩 같은 이는 빠라 政府까지 合한 5箇政府閣僚名單에 다 나오고 李東輝 같은 이는 3箇政府에서 나온다. 그 一覽表를添付한다).

諸政府 閣僚名單 (一표 이 機構에 없는 것)
(○豆 未任命
括弧內 次長)

各 政 府 部 署	國民議會 (7)	朝鮮民國 (11)	新韓民國 (6)	漢城政府 (10)	上海政府 (7)
首 副 首 相	孫 乘 煦	孫 乘 煦	李 東 輝	李 承 晚	李 承 晚
外 務	朴 泳 孝	李 承 晚	—	—	—
內 務	李 承 晚	李 承 晚	李 承 晚	李 東 輝	—
	—	李 閔 讀	朴容萬(金奎植)	朴 容 萬	金 奎 昌
	安 昌 浩	金 允 植	○ (曹成煥)	李 東 寧	植 浩

軍	務	李	東	輝	盧	伯	麟	李	伯	麟	李	東	輝
財	務(度支)	尹	顯	振	李	昌	相	始榮(李春勤)	李	始	榮	崔	在
學	務	—	—	—	安	益	浩	—	金	奎	植	李	亨
法	務	—	—	—	尹	善	善	—	申	圭	植	文	榮
交	通	—	—	祐	趙	鑑	殷	文昌範(李喜效)	文	昌	範	文	範
產	業(殖產)	南	亨	—	吳	世	昌	—	—	昌	—	—	—
勞	効	—	—	—	—	—	—	安昌浩(閔讚鎬)	安	昌	浩	—	—

그리고 首班의 稱號에 있어서만은 執政官總裁를 大統領으로 고치도록 되었는데 그 理由는 李承晚이 對外的으로 “프레지엔트”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이것을合法화시키기 위한 安昌浩政府의 用意周到한 案이였고, 그 外 섭섭한 點은 이 統合의 功勞者 安昌浩가 內務總長으로부터 勞動局總辦으로 一見 格下되는 것이었다(議員들이 이를 總長으로 昇格시키려고 했었으나 安昌浩는 굳이 이를 拒否하였다).

이러한 것을 담은 제안은 정부의 改憲案과 政府改造案으로 8月 17日 開會된 第三回 議政院會議(通番 第6回 議政院會議)에 제출되었다.

改憲案은 前文과 57개조로 審議中 舊皇室優待條項이 첨가되어 58개조가 되었다. 이리하여 改憲案은 진지한 토론 끝에 9月 6日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同日 대통령선거에 들어가 李博士를 무효 1반대 無로 선출하여 이 대과업을 성취하였다. 곧 이어 9월 11일 新憲法은 공포되고 18일에는 露領의 巨頭 李東輝가 上海로 와 國務總理로 취임하여 대통령직을 대리하여 죽망인 하나의 政府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필요성에서 개정된 大韓民國臨時憲法은 또한 創業初의 10개조 헌법이 아래 저래더 부연확장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려니와 統一憲法典으로는 前文과 8章 58條의 近代憲法으로 당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 改正된 光復前의 諸 헌법 중 어느 憲法보다도 정비되고 模範憲法이라 할 수 있으며 創業期의 大經綸을 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의 헌법들은 어려운 상황속의 獨립운동의 실정에 맞게 고쳐지기 때문에 이 보다 粗略하여 지는 것이다.

大韓民國 臨時憲法(民國元年 9月 11日)

我大韓民國은 我國이 獨立國임과 我民族이 自由民임을 宣言하였도다.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였으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該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였도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代하야 2千萬 民族의 誠忠을 合하야 民族의 恒久如一한 자유 발전을 爲하야 조직된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 (1919) 4月 11日에 發布한 10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 臨時憲法을 制정하야 써 公利를 唱明하여 公益을 증진하며 國防 及 內治를 築備하며 政府의 基礎를 鞏固히 하는 保障이 되게 하노라.

第1章 綱 領

第1條 大韓民國은 大韓人民으로 組織함.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第3條 大韓民國의 瘣土는 舊韓國의 版圖로 함.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一切 平等임.

第5條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함.

第6條 大韓民國의 主權行使는 憲法範圍內에서 臨時大統領에게 全任함.

第7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第2章 人民의 權利 義務) (筆者插入)

第8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範圍內에서 左列 各章의 自由를 享有함.

1. 信教의 自由
2. 財產의 保有와 營農의 自由
3. 言論 著作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
4. 書信秘密의 自由
5. 居住移轉의 自由

第9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에 依하여 左列 各項의 權利를 有함.

1. 法律에 依치 아니하면 逮捕 檢察 訊問 處罰을 受치 아니하는 權
2. 法律에 依치 아니하면 家宅의 侵入 또는 搜索을 受치아니 하는 權
3. 選舉權 및 被選舉權
4. 立法部에 請願하는 權
5. 法院에 訴訟하여 그 재판을 受하는 權
6. 行政官署에 訴願하는 權
7. 文武官에 任命되는 權 또는 公務에 就하는 權

第10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에 依하여 左列 各項의 義務를 有함.

1. 納稅의 義務
2. 兵役에 服하는 義務
3. 普通教育을 受하는 義務

第3章 臨時大統領

第11條 臨時大統領은 國家를 代表하고 政務를 總攬하며 法律을 公布함.

第12條 臨時大統領은 臨時議政院에서 記名 單記式 投票로 選舉하되 投票總數의 3分의 2 以上을 得한 者로 當選케 함.

但 2回投票에도 決定치 못하는 時는 3回投票에는 多數를 得한 者로 當選케 함.

第13條 臨時大統領의 資格은 大韓人民으로 公權上制限이 無하고 年齡 滿 40歲以上된 者로 함.

第14條 臨時大統領은 就任할 時에 臨時議政院에서 左와 如히 宣誓함을 要함.

餘數 一般 人民의 前에서 誠實한 心力으로 大韓民國臨時大統領의 義務를 履行하여 民國의 獨立 及 內治 外交를 完成하여 國利民福을 증진케 하며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고 또한 人民으로

하여 금 遵守케 하기를 宣誓하나이다.

第15條 臨時大統領의 職權은 左와 如함.

1. 法律의 委任에 基하거나 혹은 法律을 집행하기 為하여 命令을 發布 또는 發布케 함.
2. 陸海軍을 統率함.
3. 官制 官規를 制定하되 臨時議政院의 決議를 要함.
4. 文武官을 任命함.
但 國務員과 駐外大使 公使를 任命함에는 臨時議政院의 同意를 要함.
5. 臨時議政院의 同意를 經하여 開戰 講和를宣告하고 條約을 締結함.
6. 法律에 의하여 戒嚴을宣告함.
7. 臨時議政院 議會를 召集함.
8. 外國의 大使와 公使를 接受함.
9. 法律案을 臨時議政院에 提出하되 國務院의 同意를 要함.
10. 緊急必要가 有한 경우에 臨時議政院이 閉會된 時는 國務會議에 同意를 得하여 法律에 代한 命令을 發하되 次期議會에 承諾을 要함.
但 承諾을 得치 못할 時는 將來에 向하여 其効力を 失함을 公布함.
11. 重大한 事件에 關하여 人民의 意見書를 收合함.
12.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宣告함.
但 大赦는 臨時議政院의 同意를 要함.

第16條 臨時大統領은 臨時議政院의 承諾이 無히 國境을 擅離함을 不得함.

第17條 臨時大統領이 有故한 時는 國務總理가 代理하고 國務總理가 有故한 時는 臨時議政院에 서 臨時大統領 代理 一人을 選舉하여 代理케 함.

第4章 臨時議政院

第18條 臨時議政院은 第19條에 規定한 議員으로 組織함.

第19條 臨時議政院議員의 資格은 大韓民國 人民으로 中等以上 教育을 受한 滿 33歲 以上者로 함.

第20條 臨時議政院議員은 京畿 忠清 慶尙 全羅 咸鏡 平安 各道 及 中領僑民 俄領僑民에 各 6人江原 黃海 各道 及 美洲 僑民에게 各 3人을 選舉함.

前項에 臨時 選舉 方法은 內務部令으로 此를 定함.

第21條 臨時議政院의 職權은 左와 如함.

1. 一切 法律案을 議決함.
2. 臨時政府의 預算 決算을 議決함.
3. 全國의 租稅 貨幣制 度量衡의 準則을 議定함.
4. 公債募集과 國庫負擔에 관한 事項을 議決함.
5. 臨時大統領을 選舉함.

6. 國務員 及 駐外大使 公使 任命에 同意함.
7. 宣戰 講和와 條約締結에 同意함.
8. 臨時政府의 諮詢事件을 復答함.
9. 人民의 請願을 受理함.
10. 法律案을 提出함.
11. 法律 其他 事件에 關한 意見을 臨時政府에 建議함을 得함.
12. 質問書를 國務員에게 提出하여 出席答辯을 要求함을 得함.
13. 臨時政府에 諒請하여 官吏의 受賄와 其他 違法한 事件을 查辦함을 得함.
14. 臨時大統領의 違法 또는 犯罪行爲가 有함을 認할 時는 總員 5分의 4 以上의 出席員 4分의 3 以上의 可決로 彙劾 또는 審判함을 得함.
15. 國務員 失職 或 違法이 有함을 認할 時는 總員 4분의 3 以上의 出席, 出席員 3분의 2 以上의 可決로 彙劾함을 得함.

第22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2月에 臨時大統領이 召集함.

必要가 有할 時에 臨時召集함을 得함.

第23條 臨時議政院의 會期는 1個月로 定하되 必要가 有할 時는 院의 決議 或은 臨時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伸縮함을 得함.

第24條 臨時議政院의 議事는 出席員 過半數로 決하되 可否同數될 時는 議長이 此를 決함.

第25條 臨時議政院의 會議는 公開하되 院의 決議 또는 政府의 要求에 依하여 秘密히 함을 得함.

第26條 臨時議政院의 議決한 法律 其他 事件은 臨時大統領이 此를 公布 또는 施行함.

法律은 咨達後 15日 以內로 公布함을 要함.

第27條 臨時議政院의 議決한 法律 其他 事件을 臨時 大統領이 不可하므로 認할 時는 咨達後 10日 以內에 理由를 聲明하여 再議를 要求하되 其 再議事項에 對하여 出席員 4분의 3 以上이 前議를 固執할 時는 第26條에 依함.

第28條 臨時議政院 議長 副議長은 記名單記式 투표로 議員이 互選하여 投票總數의 過半을 得한 者로 當選케 함.

第29條 臨時議政院은 總議員 半數 以上이 出席치 아니하면 開會를 不得함.

第30條 否決한 議案은 同會期에 再次 提出함을 不得함.

第31條 臨時議政院 議員은 院內의 言論 及 票決에 關하여 院外에서 責任을 負치 아니함.

但 議員이 其 言論을 演說 印刷 筆記 其他方法으로 公布할 時는 一般法律에 依하여 處分함

第32條 臨時議政院 議員은 內亂外患의 犯罪나 或 現行犯이 아니면 會期中에 院의 許諾이 無하逮捕함을 不得함.

第33條 臨時議政院은 憲法 及 其他 法律에 規定한 外에 內部에 關한 諸般規則을 自定함을 得함

第34條 臨時議政院은 完全한 國會가 成立되는 日에 解散하고 其 職權은 國會가 此를 行함.

第5章 國務院

第35條 國務院은 國務員을 組織하여 行政事務를 一切 處辦하고 그 責任을 負함.

第36條 國務院에서 議定할 事項은 左와 如함.

1. 法律 命令 官制 官規에 關한 事項
2. 預算 決算 또는 預算外 支出에 關한 事項
3. 軍事에 關한 事項
4. 條約과 宣戰講和에 關한 事項
5. 高級官吏 進退에 關한 事項
6. 各部 權限爭議 及 主任不明에 關한 事項
7. 國務會議의 經由를 要하는 事項

第37條 國務總理와 各部總長과 勞動局總辦을 國務員이라 稱하여 臨時大統領을 補佐하되 法律及 命令에 依하여 主管行政事務를 執行함.

第38條 行政事務는 內務 外務 法務 學務 財務 交通의 各部와 勞動局을 置하여 各其 分掌함.

第39條 國務員은 臨時大統領이 法律案을 提出하거나 法律을 公布하거나 或은 命令을 發布할 時에 반드시 此에 副署함.

第40條 國務員 及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에 出席하여 發言함을 得함.

第41條 國務員이 第21條 第15項의 境遇를 當할 時는 臨時大統領이 免職하되 臨時議政院에 1次 再議를 請求함을 得함.

第6章 法院

第42條 法院은 司法官으로 組織함.

第43條 法院의 編制 及 司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44條 法院은 法律에 依하여 民事訴訟 及 刑事訴訟을 裁判함.

行政訴訟과 其他 特別訴訟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45條 司法官은 獨立하여 裁判을 行하고 上級官廳의 干涉을 受치 아니함.

第46條 司法官은 刑法의 宣告 또는 懲戒의 處分에 依치 아니하면 免職함을 不得함.

第47條 法院의 裁判은 公開하되 安寧秩序 또는 善良風俗에 妨害가 有하다 할 時는 公開치 아니함을 得함.

第7章 財政

第48條 租稅를 新課하거나 稅率을 變更할 時는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49條 現行의 租稅는 更히 法律로써 改正한 者 外에는 舊例에 依하여 徵收함.

第50條 臨時政府의 歲入歲出은 每年 預算을 臨時議政院에 提出하여 議決함을 要함.

第51條 預算款項에 超過하거나 預算外의 支出이 有할 時는 次期 臨時議政院의 承諾을 要함.

第52條 公共安全을 維持하기 為하여 緊急需用이 有한 境遇에 臨時議政院을 召集하되 不能한 時

는 臨時政府는 財政上 必要의 處分을 爲하고 第51條에 依함.

第53條 決算은 會計檢查院이 此를 檢查確定한 後 臨時政府는 其 檢查報告과 共히 臨時議政院에 提出하여 承認을 要함.

第54條 會計檢查院의 組織 及 職權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 8 章 補　　則

第55條 本 臨時憲法을 施行하여 國土回復 後 限一個年內에 臨時大統領이 國會를 召集하되 其 國會의 組織 及 選舉方法은 臨時議政院이 此를 定함.

第56條 大韓民國 憲法은 國會에서 制定하되 憲法이 施行되기 前에는 本 臨時憲法이 憲法과 同一한 効力を 發함.

第57條 臨時憲法은 臨時議政院의 議員 3분의2 以上이나 或 臨時大統領의 提議로 總員 5분의4 以上的 出席, 出席員 4분의3 以上的 可決로 改定함을 得함.

第58條 本 臨時憲法은 公布日로 부터 施行하고 元年 4月 11日에 公布한 大韓民國 臨時憲章은 本 憲法의 施行日로 廢止됨.

이를 檢討해 보면 前文은 이미 3·1大運動으로 舉族的으로 선언한 獨立意思를 재확인하고 國民의 대표기관인 議政院에서 개조의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 본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장 綱領은 7개조(A. 1—A. 7)로 제1—4조는 칼·슈밀의 소위 憲法(Verfassung)에 속하는 團體와(A. 1) 人民主權(A. 2) 領土(A. 3) 人民의 平等(A. 4)을, 제5조는 삼권분립 제6조는 대통령의 주권행사를 규정하여 본 헌법의 줄거리를 망라하고 있다(제 7조는 구황실우대항으로 헌법 사항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人民의 權利 義務」는 3개조(A. 8—A. 10)로 국민의 자유(A. 8) 權利(A. 9) 및 義務(A. 10)를 들고 있어 前後 6개의 憲法을 통하여 國務領制憲法 副主席制憲法과 여기에만이 ین민의 권리·의무를 章으로 표시하고 있다.

제 3 장 「臨時大統領章」(A. 11—A. 17)은 이 헌법만이 특유한 장이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行政首班임(A. 11)과 議政院에서 3分之2 이상으로 선출하되 3회에는 결선투표로 하고(A. 12) 연령은 40세 이상(A. 12) 就任宣誓文(A. 14) 統帥權(2項) 官吏任命權에 국무위원 및 외교사절의 議政院同意(4項) 의정원회의 소집권(7項) 긴급명령 발표권(10項) 特·大赦·減刑·復權宣告(12項) 등을 포함하 12항에 걸친 광범위한 職權을 규정(A. 17)하고 議政院의 승락없이 국정을 처리할 수 없다는 특수한 규정(A. 16)과 有故時의 대리는 국무총리 그도 有故時는 의정원에서 대리를 선거(A. 17)하도록 되어 있다.

제 4 장 「臨時議政院」은 17개조(A. 18—A. 34)로 의원은 中等 以上 교육을 받은 33세 이상이라야 하는 자격규정(A. 19), 선거구와 人員은 京畿·忠清·慶尙·全羅·咸鏡·平安·各道와 中國領僑民에서 각 6人, 강원·황해 각 道와 美州교민에서 각 2人으로 되어 있어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A. 20). 그리고 의정원은 立法權(1項) 예산심의권(2項) 대통령선거권(5項) 國

務員 및 駐外大公使任命同意(6項) 대통령 단핵·심의(14項) 국무원 단핵(15項) 등을 포함한 15개 항의 職權을 규정하고(A. 21) 규정 회의는 매년 2月에 필요시는 임시 회의가 소집되고 (A. 22) 법률 확정(A. 27) 의장 선거(A. 28) 一事不再理(A. 30) 등의 규정이 있고 A. 34에는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날에 臨時議政院은 해산하고 그 직권은 국회가 행한다는 경과 규정이 있다.

제 5 장 「國務院」은 7개조(A. 35—A. 41)로 行政사무를 일체 處辦하고 책임진다는 규정(A. 35) 7개사항의 의결사항(A. 36) 국무총리와 각부 총장·勞動局 總辦을 國務員이라 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을 집행(A. 37) 하며 행정사무는 內務 外務 軍務 法務 學務 財務 交通 各部와 勞務局으로 分掌(A. 38)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漢城政府의 各部組織으로 그것을 계승하여 上海政府의 正統化를 꾀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조항의 채택이야말로 本 憲法의 改正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라 할 것이다. 본 헌법 통과 후 정부는 이미 本 改憲案과 동시에 제출한 政府改造案 (漢城政府閣僚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의 통과를 얻어 사실상 漢城政府의 行政府는 上海에서 구체적으로 성립을 본 것이다.

제 6 장 「法院」은 6개조(A. 42—47)로 司法權의 독립(A. 45)과 司法官의 신분보장(A. 46) 필요시 비공개 재판(A. 48)등의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법원 항은 임시정부라는 제약하에 그다지 실효를 못 올릴 것이지만 만약을 위해 체제를 갖춘 감이 있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和解를 권유하여 法的 强制는 하지 않았으며 反逆者에 대한 친형처분을 한 기록도 있으나 法 適用與否는 분명치 않다.

제 7 항 「財政」은 7개조(A. 48—A. 54)로 租稅와 稅率은 법률로써 정하고 (A. 48) 現行租稅는 舊例에 의하여(A. 49) 정부의 세입·세출은 의정원에서 의결하며 (A. 50) 초과지출과 項目은 外支出은 次期 議政院의 승인을 요하고(A. 51) 정부의 긴급수용도 차기 議政院의 事後承認을 요하게 되어 있다(A. 52). 그리고 A. 53, A. 54는 會計檢查院規定인데 결산은 會計檢查院의 檢查確定 後 정부가 의정원에 보고하여 승락을 얻도록 되어 있다(A. 53). 그리고 회계검사원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도록(A. 54)되어 있다.

제 8 장 「補則」은 4개조 (A. 55—58)로 國土恢復後 1年內에 正式大會를 召集할 것(A. 55), 經過規定으로 國會가 正式 憲法을 制定할 때까지 本 臨時憲法의 有効性(A. 56)과 憲法改正은 議員 3分之2 以上이나 大統領의 提議로 總員 5分之4 以上 出席에 出席員 4分之3 以上의 可決로 成立되도록 되어 있다(A. 57).

이상 大統領制憲法은 그 규모가 정비되어 1948년 大韓民國憲法과 비슷한 데가 많아 그 母胎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臨時政府의 維持와 그 憲政

그 後 統合된 唯一의 臨時政府는 4次의 改正 憲法을 거치면서 民主政體를 가지고 1945年 解放

에 까지 이른다.

憲法이란 원래 政治法으로 그 나라의 政治的 統一의 秩序를 決斷的으로 말함이요(Carl Shmitt). 流動的인 政治的 現實에 對하여는 憲法은 一定한 限界性이 있으며(Jellinek) 實質面에 있어서는 政治的 諸勢力 間의 妥協過程의 所產이고(C. Shmitt. Hans Kelsen) 具體的인 政治的 秩序의 規範的 表現(E. R. Huber)이라고 본다면 우리 臨時政府의 憲法創造와屢次의 改正을 아울러 생각할 때 憲政이란 用語를 使用할 수 있을 것이다. 實相 政治的 現實과 遊離된 憲法이란 빈 겹례기로 顛落할 것이다.

우리 臨時政府가 그 後 中日戰을 일으키고 또한 美國에 까지 挑戰한 日帝의 壓迫下의 中國땅에서 中國政府의 周邊에서流浪하면서 獨立運動界의 狀況變動에 따라 그때 그때 現實에 맞도록 改憲하면서 憲政과 政府를 維持한 것은 一面 感嘆할 만하다.

臨時政府 27年 동안 憲法은 6段階를 거쳐 그것은 다음과 같이 展開되었다.

- (1) 大韓民國 臨時憲章 西紀 1919年 4月 23日(民國元年) 附「約法」(漢城國民大會) 同年 4月 23日
- (2) 改正 大韓民國臨時憲法 西紀 1919年 9月 11日(民國 元年)
- (3) 改正 大韓民國臨時憲法 西紀 1915年 4月 7日(民國 7年)
- (4) 改正 大韓民國臨時約憲 西紀 1927年 3月 5日(民國 9年)
- (5) 改政 大韓民國臨時約憲 西紀 1940年 10月 9日(民國 22年)
- (6) 改正 大韓民國臨時憲章 西紀 1944年 4月 22日(民國 26年)

이와 같이 그 名稱도 憲章(1.7) 憲法(2.3) 約憲(4.5)의 명칭으로 雜多한데 이를 개관하기에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上記와 같은 公式的 名稱보다는 特徵的 名稱을 붙여서 이를 닉·네임으로 사용함이 便宜하다. 그 기준은 政府構造 그 중에서도 首班의 名稱을 基準으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總理制」憲法—(上海臨政)
- 「執政官總裁制」憲法—(漢城政府)
- (2) 「大統領制」憲法
- (3) 「國務領制」憲法
- (4) 「國務委員制」憲法
- (5) 「主席制」憲法
- (6) 「主-副主席制」憲法

各段階 憲法의 改正理由는 그 때의 政治的 理由가 있었다. 이것을 解明하자면 그대로 우리 臨時政府의 政治史가 된다. 우리 臨時政府의 政治史는 他書[註4]에 미루고 여기서는 韓民族의 主權延長의 象徵인 各段階 憲法文을 (3) 國務領制에서 (6) 主副主席制까지를 다음에 싣고 說明은

註 4) 洪淳鉉, 「大韓民國臨時政府와 그 憲政」政經研究 1968. 12
同 「續 大韓民國臨時政府와 그 憲政」同 1969. 3

省略코자 한다.

改定臨時憲法 公布

本 臨時大統領은 臨時憲法 第11條에 依하여 臨時議政院에서 改定함.

大韓民國臨時憲法을 公布함.

臨時大統領 朴 股 植

大韓民國 7年 4月 7日

國務總理兼軍務總長	盧 伯 鱗
內務總長兼勞動局總辦攝	李 裕 強
法務總長	吳 永 善
學務總長兼交通總長攝	趙 尚 變
財務總長兼外務總長攝	李 圭 洪

大韓民國臨時憲法

第1章 大韓民國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임.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은 光復運動中에서 光復運動者가 全人民을 代함.

第2章 臨時政府

第4條 臨時政府는 國務領과 國務員으로 組織한 國務會議의 決定으로 行政과 司法을 統辦함.

國務員은 10人以內 5人以上으로 함.

第5條 國務領은 國務會議를 代表하여 그 決定을 執行 又는 執行케 하고 臨時議政院에 對하여
責任을 負함.

第6條 國務員은 國務會議의 一員으로 一切 國務를 議定함.

第7條 法律을 公布하며 命令을 發하며 法案을 提出하며 其他 重要文件을 發할 때는 國務領과
國務員의 連署로 함.

第8條 行政各部의 部署는 國務會議에서 定함.

第9條 行政各部의 責任主務者는 國務會議에서 互選함.

各部責任主務者は 法令과 國務會議 決定에 依하여 主管事務를 執行함.

第10條 職員의 任免은 國務會議의 決定으로 國務領이 行함.

第11條 臨時政府는 憲法 及 其他 法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行政上 必要한 命令을
發함을 得함.

第12條 臨時政府는 臨時議政院 閉院中에 緊急한 必要가 있는 때는 法律에 對한 命令을 發함을
得함.

此命令은 次期議會에서 承諾을 不得할 때는 向後로 其 効力を 失함을 公布함이 可함.

第13條 國務領은 臨時議政院에서 選舉하되 投票總數 3分 2 以上을 得한 者로 함.

但 2回 投票에도 決定치 못한 때는 3回에는 多數로 함.

第14條 國務領의 任期는 3個年으로 定하되 再選됨을 得함.

第15條 國務領이 有故한 때는 國務會議에서 代理 1人을 互選하여 그 職務를 代辦케 함.

但 國務領이 缺員이 된 때는 國務領代理는 國務領의 名義까지 代理하되 遲漏없이 臨時議政院에 要求하여 後任을 選擇케 함.

第16條 國務員은 國務領의 推薦으로 臨時議政院에서 選任함.

但 臨時議政院 閉院中의 國務員補缺은 國務會議에서 自行하고 遲滯없이 臨時議政院에 請하여 函投票決을 要함.

第17條 國務員의 免職은 國務會議에서 自行함.

第3章 臨時議政院

第18條 臨時議政院은 議員으로 組織한 立法機關임.

第19條 臨時議政院議員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地方議會에서 選舉함.

地方議會가 成立되지 아니한 地方에는 地方議會가 成立되기까지 그 地方에 本部를 有한 光復運動團體로 地方議會를 代계 할을 得함.

第20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11月에 臨時議政院이 自行 召集함.

臨時政府의 要求나 議員 3분의1 以上的 請求가 있는 때는 臨時召集함을 得함.

第21條 臨時議政院의 會期는 1個月 以內로 定하되 院의 決議 或은 臨時政府의 要求에 依하여 1個月 以內를 延長함을 得함.

第22條 臨時議政院은 議員 3분의1 以上的 出席이 아니면 議를 得치 못하고 出席議員 過半數의 賛同이 아니면 議案의 可否를 決치 못함.

第23條 臨時議政院의 議決한 法律 及 其他事件은 臨時政府가 此를 公布 又는 施行함.

法律은 咨達後 10日 以內에 公布함.

第24條 臨時議政院의 議決한 法律 及 其他事件을 臨時政府가 不合하므로 認할 때는 咨達後 7日 以內에 理由를 付하여 再議를 要求함을 得하되 其 再議案에 대하여 前議를 固執할 때는 第23條에 의 함.

第25條 臨時議政院은 議長 副議長 各 1人을 選舉하여 憲法 及 其他法律 範圍內에서 諸般內規를 定함.

第26條 臨時議政院은 別條의 規定이 有한 以外에 左의 職權을 有함.

1. 法律案을 議決함.
2. 官職 講和와 條約締結과 國使派遣에 同意함.
3. 光復方略 及 其他에 關한 意見을 臨時政府에 建議함.

4. 國務領 及 國務員의 失職 或 違法 又는 犯法行爲에 對하여 審判處罰함.

第4章 光復運動者

第27條 光復運動者는 法令을 遵守하며 財政을 負擔하며 兵役에 服하며 徵發에 應하는 義務를
有함.

第28條 光復運動者는 地方議會를 組織하여 臨時議政院議員을 選舉하여 臨時政府 及 臨時議政院
에 請願함을 得함.

第5章 會 計

第29條 租稅와 稅率은 法律로써 定함.

第30條 臨時政府의 歲入歲出의豫算 決算과 國債와 共他 國庫負擔이 될만한 事件은 臨時議政院
院決議를 要함.

第31條 臨時政府의 會計는 臨時議政院이 每年 1次 以上 檢查함.

第6章 補 則

第32條 臨時政府는 國土光復 後 1年 以內에 國會를 召集하여 憲法을 制定하되 國會成立 前에
는 本 臨時憲法이 憲法을 代함.

第33條 本 臨時憲法에 의한 臨時議政院이 成立되기 前에는 舊臨時憲法에 依하여 成立된 臨時議政院이
臨時議政院暫行條例에 依하여 그 職權을 代行함.

第34條 本 臨時憲法은 臨時議政院議員 3分의 1 以上이나 臨時政府의 提議로 議員 過半數出席과
出席員 3分의 2 以上의 可決로 改正함을 得함.

第35條 本 臨時憲法은 大韓民國 6年 7月 7일부터 施行하고 同時に 元年 9月 11일에 公布한 臨時憲法은 廢止함.

(4) 大韓民國臨時 約憲

第1章 總 約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으로서 主權은 人民이 이를 가짐. 但 光復完成前에 있어서 國權
은 光復運動者 全體에 있는 것으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의 最高權力은 臨時議政院이 이를 가짐. 但 光復運動者의 大團結인 黨이 完成
할 時는 國家의 最高權力은 此黨에 있는 것으로 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上一切平等이며 一切 自由 및 權利를 가짐.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祖國을 光復하며 社會를 改革하며 約憲 及 法律을 守하고 兵役에 服하며
租稅을 納한다. 其他 一切의 義務를 負擔함.

第2章 臨時議政院

第5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이 直接 選舉한 議員으로서 組織함. 但 閉地의 各 選舉區에 있어
서 議員을 選舉치 못할 時는 各其 選舉區에 原籍을 둔 臨時政府所在地에 僑居하는 光復運動者
가 當該 各 選舉人의 選舉權을 代行할 수 있음.

第6條 臨時議政院議員은 京畿 忠淸 慶尙 全羅 咸鏡 平安 各道 及 中領僑民에서 各 6人 江原 黃海 各道 及 美州僑民에서 各 3人을 選擧함.

第7條 第8條 (不明)

第9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10月 第1 火曜日에 政府所在地에서 召集함. 開會期日은 當院 스스로 이를 定함. 但 院의 決議 또는 政府의 要求 總議員 3分의1 以上의 要求 또는 常任委員會의 要求있을 時는 臨時議會를 召集할 수 있음.

第10條 臨時議政院은 總議員 3分의1 以上 出席에 開會하며 出席人員 過半數의 賛同으로써 決定하는 것으로 함. 但 일단 否決된 議案은 同會期內에는 再提出 할 수 없음.

第11條 第12條 第13條 第14條 第15條 第16條 第17條 第18條 第19條 (不明)

第20條 臨時議政院의 議事는 公開함. 但 議長 또는 議員 5人의 提議 또는 政府의 要求時는 院의 決議로써 秘密로 할 수 있음.

第21條 臨時議政院 議長은 院을 代表하고 會議를 召集하며 院의 議事를 整理하며 行政을 整理하며 院內의 경찰권을 執行하며 院의 會計를 處理하며 5日 이내에 議員申請에 의한 傍聽者를 許함.

第22條 第23條 第24條 第25條 第26條 第27條 (不明)

第3章 臨時政府

第28條 臨時政府의 國務委員으로써 組織된 國務會議의 決議로써 國務를 總辨함.

第29條 國務會議는 其 決定한 事項을 執行하거나 또는 政府로 하여금 執行케 하고 臨時議政院에 對하여 責任을 負함.

第30條 國務會議는 約憲 及 法律의 範圍內에서 필요한 命令을 發하며 規定을 定함. 法律에 對할 命令을 發할 시는 常任委員會의 同意를 經하여 次期議에서 追認을 구하거나 또는 追認되지 않았을 때는 効力없음을 즉시 공포하는 것으로 함.

第31條 國務會議에서 議決할 事項은 次와 如함.

光復運動方略 法律 命令豫算 決算 豫算超過 또는 豫算外의 支出 條約締結 宣戰 講和 國使派遣 外國代表員 또는 授受 其他 一切의 事項.

第32條 (不明)

第33條 國務委員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고 再選할 수 있음.

第34條 國務委員이 계속 2개월 있지 않을 때는 自然解任되는 것으로 함.

第35條 國務委員 及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 及 其他의 各委員會에 出席發言할 權을 有함.

第36條 國務會議에 있어서의 主席은 國務委員이 이를 互選함.

第37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總委員 過半數의 賛同으로써 함.

第38條 國務會議의 會議規定 及 소속職員은 國務會議에서 定함.

第39條 臨時政府에 部 及 소속 職員을 置하여 行政事務를 處理케 함. 光復運動時期中에는 필요에 應하여 各部의 行署를 適宜의 地에 置할 수 있음.

- 第40條 內務 外務 法務 財務 등에 각부를 두고 時에 應하여 그 數를 增減할 수 있음。
各部 또는 行署의 組織 及 기타 職務範圍에 관한 規定은 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國務會議에서 定함.
- 第41條 行政各部의 責任主務員은 國務會議에서도 選함.
- 第42條 行政各部의 責任主務員은 法律 規定 及 國務會議의 決議에 의하여 主管事務를 處理執行하고 臨時議政府에 對하여 責任을 負함.
- 第43條 行政各部의 職員은 主務員의 추천에 의하여 國務會議에서 任命 또는 免職함.
- 第44條 (省略)
- 第45條 法院 及 軍法會議의 組織 及 職務權限에 관한 規定은 法律로써 定함.

第4章 會 計

第46條 第47條 第48條 (不明)

第5章 補 則

- 第49條 本 約憲의 改定은 臨時議政院에서 總議員 3分之1 이상 또는 政府의 제안으로써 總議員 4分之3의 出席 及 出席員 3分之2의 賛同으로 함. 光復運動의 大團結인 黨의 完成時는 此黨에서 改正함.
- 第50條 本 約憲은 大韓民國 9年 4月 11日부터 施行함과 동시에 大韓民國 7年 4月 7일에 공포한 臨時憲法은 이를 廢止함.

大韓民國 9年 3月 5日

國務領 金 九
國務員 尹 琦 燮 · 李 圭 洪 · 吳 永 善 · 金 甲 · 金 澈

(5) 大韓民國臨時約憲(大韓民國 22年 10月 9日 改訂頒布)

第1章 總 綱

- 第1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人民에게 있다. 光復完成前에는 主權이 光復運動者 全體에 있다.
- 第2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一切 平等하고 또 法律範圍內에서 自由의 權利가 있다.
-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祖國을 光復하며 社會를 改革하고 約憲 및 法令을 遵守하며 兵役에 服하고 租稅를 納하는 一切 義務를 진다.

第2章 臨時議政院

- 第4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人民이 直接選舉하는 議員에 依하여 이를 組織함.
但, 國內各選舉區에서 選舉를 實行하기 不能時에는 臨時政府所在地에 僑居하는 各該選舉區에 原籍을 가진 光復運動者가 各該區選舉人의 選舉權을 代行함에 依한다.
- 第5條 臨時議政院議員은 57人으로 함. 京畿 · 忠清 · 慶尚 · 全羅 · 咸鏡 · 平安 各道 및 中領僑

民·俄領僑民은 각 6人을 選하고 江原·黃海各道와 美領僑民은 각 3人을 選한다.

第6條 大韓民國人民으로 年齡 18歲에 完全한 公權을 가진 者는 選舉權이 있다.

그리고 年齡 23歲에 選舉權이 있는 者는 被選舉權이 있다.

第7條 臨時議政院選舉規定은 選舉法制定이 있기 前에는 國務委員會議決로써 이를 規定한다.

第8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10月 中旬에 臨時政府所在地에서 스스로 召集 및 閉會한다. 期日은 스스로 이를 定한다.

但, 院의 決議 및 政府의 要求 또는 議員 3分의 1以上이 要求할 時는 臨時議會를 召集한다.

第9條 臨時議政院은 總議員 3分의 1 以上의 出席 및 出席議員 過半數의 賛同으로써 議案을決定함. 但 否決된 議案은 同 會期內에는 이를 再提出할 수 없다.

第10條 臨時議政院은 議員 혹은 政府가 提出하는 一切 法案 및 國家의 豫算決算을 議決하고 國務委員會主席 및 國務委員을 選舉하여 駐外使節의 任免과 條約締結 和約 宣戰 講和를 同意하되 總議員 過半數의 出席 및 出席員 3分의 2 賛同을 經함을 要한다.

但, 國務委員會主席 및 國務委員 選舉에 對하여는 2回投票로도 未決時에는 多數로써 이를 決定한다.

第11條 臨時議政院이 議決한 法律 및 其他 案件은 政府에 依하여 公布되고 또한 이를 施行한다.

第12條 臨時議政院은 議長, 副議長 各 1人을 選舉하고 또한 諸般內規를 定하되 議長 副議長의選舉에는 總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員 3分의 2 賛同을 經함을 要하고 2回投票로도 未決時에는 多數로써 이를 決定한다.

第13條 臨時議政院은 議員의 當選證明書를 審查하고 또한 議員資格 및 選舉의 疑議에 對하여 最高判決權이 있다.

第14條 臨時議政院은 國務委員會主席 및 國務委員 또는 駐外使節이 失職 또는 違法 또한 內亂外患 等의 犯罪行爲가 있다고 認定할 時는 總議員 過半數의 出席 및 出席員 3分의 2의 可決로써 이를 審判 또는 免職한다.

第15條 臨時議政院의 議事는 이를 公開한다.

但, 議長 또는 議員 5人以上의 提議 또는 政府의 要求時는 院의 決議로써 秘密히 이를 行한다.

第16條 臨時議政院議長은 議院을 代表하여 會議를 召集하고 院內의 議事를 整理하고 院의 行政을 辨理하며 院內의 警察權을 執行하고 院의 會計를 處理하며 또한 5日 以內에 議員의 請暇와 傍聽者를 允許한다.

第17條 議員의 議案提出時에는 法律 및 審查案은 반드시 5人以上, 其他 案件은 3人以上의 連署를 하여야 한다.

第18條 議員이 無故히 開會後日까지 當選證明書를 提出치 아니하거나 或 無故히 連續하여 2週日을 缺席하는 時는 그 職務는 自然 解任되고 議員辭職의 聽許與否는 院議로써 이를 定한다.

第19條 議員은 會期中에는 院의 許可를 經하지 않고는 그 自由에 對한 妨害를 받지 않으며 院內의 言論과 表決에 關하여는 院外에서 그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20條 議員은 3人以上의 連署로 政府나 或 指定된 國務委員에 向하여 質問權이 있으며 國務委員은 5日以內에 口頭 또는 書面으로 이에 答辯하되 答辯아니 할 때는 반드시 그 理由를 明示해야 된다.

但, 質問議員의 要求時에는 出席하여 이에 答辯한다.

第21條 議員의 懲戒는 發言 또는 出席의 停止와 除名으로 總議員 過半數의 出席 및 出席員 3分의 2의 決議를 經하여 이를 處罰한다.

第22條 議長이 違法時는 반드시 5人以上 議員의 提議로 審查를 經하여 前條 表決數에 依하여 이를 免職한다.

第3章 臨時政府

第23條 臨時政府는 이를 國務委員 主席 및 國務委員으로 組織함.

國務委員은 6人以上 15人以內로 定함.

第24條 國務委員會는 國務를 議決, 執行하고 또한 行政各部를 두며 各該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各部의 組織과 條例를 制定, 施行한다.

第25條 國務委員 및 行政各部는 約憲과 法律範圍內에서 必要한 命令과 決定을 發布하고 이를 規定한다.

第26條 國務委員會의 職權은 다음과 같다.

1. 光復運動方略과 建國方案을 議決한다.
2. 法律과 命令事項에 關한 것을 議決한다.
3. 豫算 決算 豫算超過 및 算外支出案을 議決한다.
4. 一切 宣戰 講和 및 條約締結案에 關한 것을 議決한다.
5. 行政各部의 事項을 議決한다.
6. 國務委員의 辞職을 議決한다.
7. 高級官吏 및 駐外使節과 政府代表를 任免한다.
8. 外國 使節을 接受한다.
9. 臨時議政院의 報告 및 提案을 作成, 提出한다.
10. 國務委員會의 會議規程을 決定하고 行政 各部의 部署 및 職員을 設置한다.

第27條 國務委員會主席의 職權은 다음과 같다.

1. 國務委員會를 召集한다.
2. 國務委員會에 主席에 任한다.
3. 臨時政府를 代表한다.
4. 國軍을 總監한다.
5. 國務委員의 副署로써 法律을 公布하고 命令을 發한다.
6.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行政各部의 命令을 發하고 停止시킨다.
7. 國務委員會의 決議로써 緊急命令을 發한다.

8. 國書를 接受한다.

9. 政治犯을 特赦한다.

10. 國務委員 會議中 可否同數時에 이를 表決한다.

但, 緊急命令을 發했을 때는 次期議會의 追認을 求하되 否決時에는 即時 效力의 失去를 公布 한다.

第28條 國務委員會主席 및 國務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但 再選할 수 있다.

國務委員會主席 有故時에는 國務委員會가 代理 1人을 互選한다.

第29條 國務委員會主席 및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 및 各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30條 國務委員會의 議決은 總委員 過半數의 賛同으로써 定한다.

第31條 國務委員會는 秘書長 1人을 두고 國務委員會의 事務 및 會議事項에 關해서 掌理한다.

第32條 各部는, 內務, 外務, 軍務, 法務, 財務로 定한다. 但 時宜에 依據하여 各部를 增減할 수 있다.

第33條 行政各部에는 部長 1人을 두되 國務委員會에서 互選한다.

第34條 國務委員會主席 및 行政各部의 部長은 法律規程 및 國務委員會의 決定에 依據하여 主管事務를 處理執行하고 臨時議政院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第35條 行政各部의 職員은 各該部長의 推薦을 經由하여 國務委員會에서 任免한다.

第36條 地方行政組織은 自治行政의 原則에 依據하여 定하되 自治團體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 써 定한다.

第37條 法律 및 軍法會議의 組織과 職務權限에 關해서는 法律로써 規定한다.

第 4 章 會 計

第38條 租稅 및 稅率은 法律로써 規定한다.

第39條 國家歲入歲出의 豫算 決算 및 國債와 其他 國家負擔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臨時議政院의 決議로써 行한다. 豫算超過 或은 豫算外支出은 次議會의 承認을 要한다.

第40條 國家의 會計는 會計檢査院에서 檢査한다.

第 5 章 補 則

第41條 本約憲은 臨時議政院에서 總議員 3分의 1以上 혹은 政府의 提案으로 總議員 4分의 3의 出席과 出席員 3分의 2의 賛同으로 改正한다.

第42條 本約憲은 大韓民國 9年 4月 11日 公布의 約憲에 依하여 大韓民國 22年 10月 9日부터 改正施行한다.

(6) 臨時憲章(1944年 4月 22日)

現行 大韓民國臨時 約憲 第12條 及 同 27條 第5項에 依하여 大韓民國臨時議政院 第36回臨時議會에서 修改함. 大韓民國臨時憲章을 為에 公布함.

大韓民國 26年 4月 22日

大韓民國臨時政府 國務委員會

主席 金九

國務委員 金奎植·柳東說·李始榮·朴贊翊·張建相

曹成煥·趙琬九·趙素昂·車利錫·黃學秀

大韓民國臨時憲章

우리 民族은 優秀한 傳統을 가지고 스스로 開拓한 瘵土에서 悠久한 歷史를 通하여 國家生活을 하면서 人類의 文明과 進步에 偉大한 貢獻을 하여 왔다. 우리 國家가 强盜日本에게 敗亡된 뒤에 全民族은 瘵寐에도 國家의 獨立을 渴望하였고 無數한 先烈들은 피와 눈물로써 民族自由의 回復에 努力하여 3·1大革命에 이르러 全民族의 要求와 時代의 趨向에 順應하여 政治 經濟 文化 其他一切 制度에 自由 平等 및 進步를 基本精神으로 한 새로운 大韓民國이 臨時政府가 建立되었고 아울러 臨時憲章이 制定되었다. 이에 本院은 25년의 經驗을 積하여 第36回 議會에서 大韓民國 臨時憲章을 凡 7章 共 62條로 改修하였다.

第1章 總 約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임.

第2條 大韓民國의 瘵土는 大韓의 固有한 版圖로 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原則上 韓國民族으로 함.

第4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人民全體에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主權이 光復運動者 全體에 있음.

第2章 人民의 權利 義務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 各項의 自由의 權利를 享有함.

1. 言論 出版 集會 結社 龕業 及 信仰의 自由
2. 居住 旅行 及 通信 秘密의 自由
3. 法律에 依하여 就學 就職 及 扶養을 要求하는 權利
4. 選舉 및 被選舉의 權利
5. 公訴 私訴 及 請願을 提出하는 權利
6. 法律에 依치 않으면 身體의 搜索 逮捕 監禁 審問 或 處罰을 받지 않는 權利
7. 法律에 依치 않으면 家宅의 侵入 搜索 出入制限 或 封閉를 받지 않는 權利
8. 法律에 依치 않으면 財產의 徵發 没收 或 抽稅를 받지 않는 權利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 各項의 義務가 있음.

1. 祖國을 光復하고 民族을 復興하고 民主政治를 保衛하는 義務
2. 憲章과 法令을 遵守하는 義務
3. 兵役과 公役에 服務하는 義務
4. 國稅를 納入하는 義務

第7條 人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 或 剝奪하는 法律은 國家의 安全을 保衛하거나 社會의 秩序를 維持하거나 或은 公共利益을 保障하는 데 必要한 것이 아니면 制定하지 못함.

第8條 光復運動者는 祖國光復을 唯一한 職業으로 認하고 間斷없이 努力하거나 又는 間接이라도 光復事業에 精力 或 物力의 實踐貢獻이 있는 者로 함. 但, 光復運動에 危害를 加하는 行爲가 있을 時에는 光復運動者의 資格을 喪失함.

第3章 臨時議政府

第9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 人民이 直接 選舉한 議員으로 組織함.

第10條 臨時議政院 議員은 京畿 忠清 全羅 慶尙 咸鏡 平安 各道에서 各 6人 江原 黃海 各道에서 各 3人 中領 及 俄領僑民에서 各 6人, 美領僑民에서 3人을 選舉함. 內地 各 選舉區에서 選舉할 수 없을 때에는 各 該選舉區에 原籍을 두고 臨時政府 所在地에 僑居하는 光復運動者가 各該區選舉人의 選舉權을 代行할 수 있음.

第11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年齡 18歲 되고 完全한 公權이 있는 者는 選舉權이 있고 年歲 滿 25歲되고 選舉權이 있는 者는 被選舉權이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第8條 原項에 該當한 者는 選舉權이 있고 第8條 原項 上 1段에 該當한 滿 3年 以上의 歷史가 있는 者는 被選舉權이 있음.

第12條 議員의 任期는 3個年으로 하되 連選될 수 있음 議員의 改選은 原議員의 任期滿了後 60日 以內에 行함을 要함.

第13條 臨時議政院 議員 選舉에 關한 規定은 選舉法이 制定되기 前까지는 國務委員會의 議決로 써 定함.

第14條 議員이 無故히 當選證書를 開院後 3日까지 提出치 아니하거나 無故히 連續 2週日까지 缺席할 때에는 그 職務는 自然 解任됨.

第15條 議員은 會期中에 院의 許可 敘이는 그 自由의 妨害를 받지 아니하여 院內의 言論과 表決에 關하여는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16條 議員은 3人 以上의 連署로 政府나 指定한 國務委員에게 質問하는 權利가 있고 國務委員은 5日 以內에 말이나 글로 答辯치 아니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며 質問한 議員이 要求한 때에는 院에 出席하여 答辯함.

第17條 臨時議政院의 職權은 아래와 같음.

1. 議員當選證書의 審查와 議員資格 及 選舉의 疑義에 對한 審判
2. 議員資格에 對한 處理
3. 議員이나 政府에서 提出한 一切 法案의 議決
4. 租稅 及 稅率과 國庫의 負擔이 落實한 事項의 議決
5. 國家의 豫算決算 及 豫算超過나 豫算外支出의 議決
6.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委員의 선거
7. 條約締結과 宣戰媾和의 同意

第18條 臨時議政院은 國務委員會 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이 失職違法 또는 內亂外患 等 犯罪 行爲가 있거나 或은 信任할 수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役劾案 或은 不信任案을 提出하여 役劾案이 通過되면 그를 免職하고 不信任案이 通過되면 그가 自行辭職함.

第19條 臨時議政院은 議長 副議長 各 1人을 互選하여 그 諸般內規를 定함.

第20條 臨時議政院 議長은 院을 代表하여 會議를 召集하여 院의 議事를 整理하여 院의 行政을 辦理하여 院內의 警察權을 執行하여 院의 會計를 處理하여 5日 以內의 議員請由와 傍聽者를 許함. 副議長은 議長을 補佐하여 議長이 有故할 때에는 그를 代理함.

第21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4月 11일에 臨時政府所在地에서 自行召集함.

臨時議政院의 會期는 3週日로 定하고 必要로 認할 때에는 延期함을 得하되 全會期의 3分之1 을 超過함을 不得함.

院의 決議나 政府의 要求나 總在籍議員 3分之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會를 召集함.

第22條 臨時議政院은 總在籍議員 半數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함.

第23條 臨時議政院은 出席議員 半數 以上의 賛同으로 議案을 決定함.

第17條 第3·4·5·6·7 各項과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의 役劾案 或 不信任案의 議決과 議長 及 副議長의 選舉와 議員의 懲戒 及 議長의 免職은 出席議員 3分之2의 賛同으로 하되 但 選舉에 對하여는 2回 投票에도 未決될 때에는 多數로 함.

第24條 議員이 議案을 提出한 때에는 法律案은 5人 以上 役劾 或 不信任案과 議長의 免職案은 總在籍議員 3分之1 以上 其他 案은 3人 以上의 連署로 함.

1次 否決된 議案은 同一會期에 다시 提出하지 못함.

第25條 臨時議政院의 議決한 法律과 其他 案은 臨時政府가 分布 또는 施行함.

法律은 政府에 送達한 後 10日 以內에 公布함.

第26條 議員이 缺員될 때에는 議長이 政府로 通知하여 補選케 함.

第27條 議員의 懲戒는 發言 或 出席의 停止와 除名으로 함.

第28條 議長이 違法할 때에는 第22條 第2項과 第24條 第1項에 依하여 免職함.

第4章 臨時政府

第29條 臨時政府는 國務委員會 主席과 國務委員으로 組織한 國務委員會로써 國務를 總辦함.

國務委員은 8人 以上 14人 以內로 함.

第30條 國務委員會의 職權은 아래와 같음.

1. 復國과 建國의 方策을 議決함.
2. 法律 命令 及 提案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3. 豊算 決算 豊算超過 及 豊算外支出을 議決함.
4. 宣戰 嬌和 及 條約締結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5. 行政各部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함.
6. 國務委員의 辞職을 處理함.

7. 中央機關의 主務責任者 及 高級文武 職員과 駐外使節 及 政府代表를 免함.

8. 外國使節의 接受與否를 議決함.

9. 軍務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10.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을 議決함.

11. 臨時議政院에 提出할 報告書와 提案을 作成함.

12. 國務委員會의 會議規程을 定하여 所關 各機關의 設廢를 議決함.

第31條 國務委員會의 議決은 總委員 半數 以上의 賛으로 함.

第32條 國務委員會 主席의 職權은 아래와 같음.

1. 臨時政府를 代表함.

2. 國書를 接受함.

3. 國軍을 統監함.

4. 國務委員會를 召集함.

5. 國務委員會議의 主席이 됨.

6. 國務委員會의 可否 同數될 때에 表決함.

7. 國務委員의 副署와 法律을 公布하며 命令을 發함.
8. 行政統一 或 公益에 妨害되거나 違法 或 越權으로 認할 때에는 行政各部署의 命令을停止하고 國務委員會에 取決함.

9. 國務委員會의 議決로 緊急命令을 發함.

但, 緊急命令을 發할 때에는 次期議會의 追認을 要하되 追認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效力이 滅失됨을 即時 公布함.

第33條 副主席은 主席을 輔左하며 國務委員會에 列席하고 主席이 有故時에 그 職權을 代行함.

第34條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委員의 資格은 第8條 原項 上一段 規定에 該當한 10年以上의 歷史가 있고 年齡 滿 40歲 以上者로 함.

第35條 國務委員會 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委員의 任期는 3個年으로 定하되 連選될 수 있음.

第36條 國政委員會主席 及 副主席 及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과 그 各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음.

第37條 國務委員會는 秘書處를 두어 國務委員會의 事務와 會議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第38條 國務委員會는 行政各部署와 統帥審判 檢查 等 各 機關을 두어 各該 主管事務를 辦理하고 臨時議政院에 負責함.

右項 各機關의 組織條例는 國務委員會에서 制定施行하되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39條 行政各部署는 內務 外務 軍務 法務 財務 文化 宣傳 等 各部와 其他 各委員會를 두되 時宜에 依하여 그 數를 增減할 수 있음.

第40條 行政各部署事務의 連絡과 統制를 為하여 各主務責任者 聯席會議를 열되 國務委員會 主席이 主持함.

第41條 國務委員會와 行政各部署는 憲章과 法律範圍內에서 必要한 命令을 發함.

第42條 國務委員會主席及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는 法律의 規定과 國務委員會의 決定에 依하여 各其主管事務를 辦理함.

第43條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는 主席의 提薦으로 中央機關의 所屬職員은 各該機關 主務責任者의 薦報로써 國務委員會에서 任免함.

第44條 地方行政組織은 自治行政의 原則에 依하여 定하고 自治團體의 組織과 權限은 國務委員會에서 制定施行하고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1章 審判院

第45條 大韓民國의 司法權은 中央審判院 地方審判所 及 其他 特種審判委員會 等 機關에서 執行함.

第46條 中央審判院은 審判委員長 1人及 審判委員 2人乃至 5人과 및 補助職員 若干人으로 組職함.

第47條 各級審判機關의 組織은 法律로 定함.

第48條 各級審判機關은 法律에 依하여 民事 刑事의 審判과 革命者懲戒處分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民法 刑法 革命紀律 及 革命者 懲戒條例는 法律로 定함.

第49條 國事審判 行政審判 等 特設機關의 그 組織及 權限은 法律로 定함.

第50條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은 法律에 依하여 中央審判委員長의 提出을 經하여 國務委員會에서 行함.

第51條 審判委員長及 審判委員은 獨立하여 審判을 行하고 任可機關 或 個人의 干涉을 받지 아니함.

第52條 各級審判機關의 審判은 公開하되 安寧秩序와 善良風俗에 妨害가 있다고 認할 때에는 秘密히 함.

第53條 中央審判委員長과 審判委員은 國務委員會에서 選任하되 任期는 3個年으로 함.

第54條 各級審判機關의 所屬職員은 中央審判委員長의 提薦으로 國務委員會에서 任命함.

第55條 審判委員長及 審判委員은 刑의 宣告나 革命者 懲戒條例上의 重大한 處分에 依치 아니하면 任期內에 免職하지 못함.

第56條 本章 各條의 規定을 實施할 可能이 있기 前까지는 審判案件의 發生을 따라 國務委員會에서 臨時로 審判委員若干人을 選出하여 辦理함.

第6章 會計

第57條 租稅와 稅率은 法律로 定함.

第58條 國家의 豫算決算 及 會計는 檢查確定한 會計檢査院의 報告와 같이 議政院에 提出하여 通過를 要함.

第59條 會計檢査院에서는 國家의 一切會計를 隨時로 檢查함.

第60條 會計年度는 4月 1日부터 翌年 3月 末日까지로 定함.

第7章 補 則

第61條 本憲章은 臨時議政院에서 總在籍議員 3分之1 以上이나 政府의 提案으로 總在籍議員 4分之3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2의 賛同으로 改正함을 得함.

第62條 本憲章은 公布日로 부터 施行하고 大韓民國 22年 10月 9일부터 施行한 臨時約憲은 廢止함.

그리고 (5)와 (6) 사이에 「建國綱領」이라는 것이 公布되었는데 이는 中日戰爭에서 日帝가 中國의 長期抗戰策으로 구령정이에 빠져 들어갈 즈음 孫文의 建國大綱과도 같이 光復後의 施政青寫眞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社會政策的 三均主義 (政治, 經濟, 文化的 三均)에 立脚하여 이의 完成을 指向하는 것이었다.

建國綱領은 3章으로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内容이다.

第1章 總 綱

7項으로 우리나라의 諸般制度의 歷史를 斜述

第2章 復 國

8項으로 나누어 復國過程에서의 任務와 政策의 概略을 明示하여 獨立運動者의 民主主義革命의 過程과 職責을 表示.

第3章 建 國

7項으로 1項에서 3項은 建國段階의 政策을 表示

4項 國民의 權利·義務를 明示

5項 中央 및 地方制度의 輪廓을 明示

6項 土地 및 一般經濟制度

7項 教育制度의 模型表示

11. 建國綱領(1941年 1月 28日)

大韓民國建國綱領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함.

大韓民國 23年 11月 28日

臨時政府國務委員會主席 金 九

國務委員 李始榮 曹成煥 趙琬九 趙素昂 朴贊翊 車利錫

第1章 總 綱

- 우리나라는 우리 民族이 半萬年來로 共通한 말과 글과 國土와 主權과 經濟와 文化를 가지 고 共通한 民族正氣를 길러온 우리 끼리로써 形成하고 團結한 固定的 集團의 最高組織임.
- 우리 나라의 建國精神은 三均制度의 歷史的 根據를 두었으니 先民이 明命한 바 「首尾均平位하면 與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社會各層 各級이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亨有를 均平하게 하여 國家를 振興하여 太平을 保維하리라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

3. 우리 나라의 土地制度는 國有에 遺法을 두었으니 先賢의 痛論한 바 “遵聖祖至公分授之法 하여 革後人私有兼併之弊”라 하였다. 이는 素亂한 私有制度를 國有로 還元하라는 土地革命의 歷史的宣言이다. 우리 民族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土地制度를 國有로 確定할 것임.
4. 우리 나라의 對外主權이 衰失되었을 때에 殉國한 先烈은 우리 民族에게 同心復國할 것을 遺囑하였으니 이른바 望我同胞는勿忘國恥하고 堅忍努力하여 同心同德으로 以捍外侮하여 復我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前後殉國한 數十萬 先烈의 典型的 遺志로써 現在와 將來의 民族正氣를 鼓動함이니 우리 民族의 老少男女가 永世不忘할 것임.
5. 우리 나라의 獨立宣言은 우리 民族의 赫赫한 革命의 發因이며 新天地의 開闢이니 이른바 “우리 祖國이 獨立國임과 우리 民族이 自由民임을 宣言하노라 이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여 人類平等의 大意를 蘭明하며 이로써 子孫萬代에 告하여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하라”하였다. 이는 우리 民族이 3·1憲典을 發動한 元氣이며 同年 4月 11일에 13道 代表로 組織된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을 세우고 臨時政府와 臨時憲章 10條를 創造發表하였으니 이는 우리民族의 自力으로써 異族專制를 顛覆하고 5千年 君主政治의 舊殼을 破壞하고 새로운 民主制度를 建立하며 社會의 階級을 消滅하는 第一步의 着手이었다. 우리는 大衆의 풋방울로 創造한 新國家 形式의 礎石인 大韓民國을 絶對로 擁護하며 確立함에 共同血戰할 것임.
6. 臨時政府는 13年 4月에 對外宣言을 發表하고 三均制度의 建國原則을 蘭明하였으니 이른바 “普通選舉制度를 實施하여 政權을 均하고 國有制度를 採用하여 利權을 均하고 共費教育으로써 學權을 均하며 國內外에 對하여 民族自決의 權利를 保障하여서 民族과 民族 國家와 國家와의 不平等을 革除할지니 이로써 國내에 實現하면 特權階級이 곧 消亡하고 少數民族의 侵沒을 免하고 政治와 經濟와 教育權利를 고로히 하여 軒輊이 없게 하고 同族과 異族에 對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하였다. 이는 三均制度의 第一次宣言이니 이 制度를 發揚擴大할 것임.
7. 臨時政府는 以上에 根據하여 革命의 三均制度로써 復國과 建國을 通하여 一貫한 最高公理인 政治 經濟 教育의 均等과 獨立民主 政治의 三種方式을 同時に 實施할 것임.

第2章 復國

1. 獨立을 宣布하고 國號를 一定히 하여 行使하고 臨時政府와 臨時議政院을 세우고 臨時約法과 其他 法規를 頒布하고 人民의 納稅와 兵役의 義務를 行하여 軍力과 外交와 黨務와 人心이 서로 配合하여 敵에 對한 血戰을 政府로서 維續하는 過程을 復國의 第一期라 할 것임.
2. 一部國土를 恢復하고 黨政 軍의 機構가 國내에 轉換하여 國際的 地位를 本質的으로 取得함에 充足한 條件이 成熟할 때를 復國의 二期라 할 것임.
3. 敵의 勢力에 包圍된 國土와 俘虜된 人民과 侵占된 政治 經濟와 抹殺된 教育과 文化 등을 完全히 奪還하고 平等地位와 自由意志로써 各國 政府와 條約을 締結할 때를 復國의 完成期라 할 것임.
4. 復國期에서 臨時約憲과 其他 頒布한 法規에 依하여 臨時議政院의 選舉로 組織된 國務委員

會로써 復國의 公務를 執行할 것임.

5. 復國의 國家主權은 光復運動者 全體가 代行할 것임.
6. 三均制度로써 民族의 革命意識을 喚起하여 海內의 民族의 革命力量을 集中하여 光復運動의 總動員을 實施하여 將校와 武裝隊伍를 統一訓練하여 相當한 兵額의 光復軍을 丟丢마다 編成하여 血戰을 強化할 것임.
7. 敵의 侵奪勢力を 撲滅함에 一切 手段을 다하되 大衆的 反抗과 武裝的 戰爭과 國際的 外交와 宣傳 等의 獨立運動을 擴大強化할 것임.
8. 우리 獨立運動을 同情하고 援助하는 民族과 國家와 連絡하여 光復運動의 力量을 擴大할 것이며 敵日本과 抗戰하는 友邦과 切實히 連絡하여 抗日同盟軍의 具體的 行動을 取할 것임.

第3章 建國

1. 敵의 一切 統治機構를 國내에서 完全히 撲滅하고 國都를 奠定하고 中央政府와 中央議會의 正式活動으로 主權을 行使하며 選舉와 立法와 任官과 軍事와 外交와 經濟 等에 關한 國家의 政令이 自由로 行使되어 三均制度의 綱領과 政策을 國내에 進行하기 始作하는 過程을 建國의 第一期라 함.
2. 三均制度를 骨字로 한 憲法을 實施하여 政治와 經濟와 教育의 民主的 施設로 實際上 均衡을 圖謀하며 全國의 土地와 大生產機關의 國有가 完成되고 全國 學齡兒童의 全數가 高級教育의 免費修學이 完成되고 普通選舉制度가 拘束敘이 完全히 實施되어 全國 各里洞村과 面邑과 島郡府와 道의 自治組織과 行政組織과 民衆團體와 民衆組織이 完備되어 三均制度가 配合實施되고 傾向各層의 極貧階級의 物質과 精神上 生活程度과 文化水準이 提高保障되는 過程을 建國의 第二期라 함.
3. 建國에 關한 一切 基礎的 施設 即 軍事 教育 行政 生產 衛生 警察 農工商 外交 等 方面의 建設機構와 成績이 豫定計劃의 過半이 成就될 때를 建國의 完成期라 함.
4. 建國期의 憲法上 人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는 左列 原則에 依據하고 法律로 另定施行함.
 - 가. 勞働權 休息權 被救濟權 被保險權 免費修學權 參政權 選舉權 被選舉權 罷免權 立權法과 社會 各 組織에 加入하는 權利가 있음.
 - 나. 婦女는 經濟와 國家와 文化와 社會生活上 男子와 平等權利가 있음.
 - 다. 身體自由와 居住 言論 著作 出版 信仰 集會 結社 遊行 示威運動 通信秘密 等의 自由가 있음.
 - 라. 普通選舉에는 滿 18歲以上 男女로 選舉權을 行使하되 信仰 教育 居住年數 社會出身 財產狀況과 過去行動을 分別치 아니하며 選舉權을 가진 滿 23歲 以上的 男女는 被選舉權이 있으되 每個人의 平等과 秘密과 直接으로 함.
 - 마. 人民은 法律을 지키며 稅金을 바치며 兵役에 應하며 公務에 服하고 祖國을 建設保衛하며 社會를 施設支持하는 義務가 있음.

바. 敵에 附和한 者와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와 建國綱領을 反對한 者와 精神이 缺如한 者
와 犯罪判決을 받은 者는 選舉와 被選舉權이 없음.

5. 建國時期의 憲法上 中央과 地方의 政治機關은 左列한 原則에 依據함.

가. 中央政府는 建國 第一期에 中央에서 總選舉한 議會에서 通過한 憲法에 依據하여 組織
한 國務議會의 決議로 國務를 執行하는 全國的 最高行政機關임. 行政分權은 內外 軍法
財 交通 實業 教育 各部로 함.

나. 地方에는 道에 道政府 府郡島에 府郡島政府를 두고 道에 道議會 府郡島에 府郡島議會
를 둠.

6. 建國時期의 憲法上 經濟體系는 國民各個의 均等生活을 確保함과 民族全體의 發展과 및 國
家를 建立保衛함에 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左列한 基本原則에 依據하여 經濟政策을 推行
함.

가. 大生產機關의 工具와 手段을 國有로 하고 土地 鐳山 漁業 農林 水利 沼澤과 水上 陸上
空中의 運輸事業과 銀行 電話 交通 等과 大規模의 農工商企業과 城市 工業區域의 共用
的主要 房產은 國有로 하고 小規模 或 中等企業은 私營으로 함.

나. 敵의 侵占 或 施設한 官公 私有土地와 漁業 鐳山 農林 銀行 會社 工場 鐵道 學校 教
會 寺刹 病院 公園 等의 房產과 基地와 其他 經濟 政治 軍事 文化 Education 宗敎 衛生에 關한
一切 私有資本과 附敵者의 一切 所有資本과 不動產을 没收하여 國有로 함.

다. 没收한 財產은 貧工 貧農과 一切 無產者의 利益을 為한 國營 或 公營의 集團生產 機關
에 充公함을 原則으로 함.

라. 土地의 相續 賣買 抵押 典讓 遺贈 轉租借의 禁止와 高利貸金業과 私人의 払傭農業의
禁止를 原則으로 하고 둘레農場 國營工場 生產消費과 貿易의 合作機構를 組織擴大하여
農工大眾의 物質과 精神上 生活程度과 文化水準을 提高함.

마. 國際貿易 電氣 自來水와 大規模의 印刷 出版 電映 劇場 等을 國有國營으로 함.

바. 老工 幼工 女工의 夜間勞働과 年齡 地帶 時間의 不合理한 労働을 禁止함.

사. 工人과 農人의 免費醫療를 普施하여 疾病消滅과 健康保障을 勵行함.

아. 土地는 自力自經人에게 分給함을 原則으로 하되 元來의 扜傭農 自作農 小地主農 中地
主農 農人地位를 보아 低級으로부터 優先權을 줌.

7. 建國時期의 憲法上 教育의 基本原則은 國民各個의 科學的 知識을 普遍的으로 均等化하기
爲하여 左列한 原則에 依據하여 教育政策을 推行함.

가. 教育宗旨는 三均制度로 原則을 삼아 革命公理의 民族正氣를 配合發揚하여 國民道德과
生活機能과 自治能力을 養成하여 完全한 國民을 助成함에 둠.

나. 6歲부터 12歲까지의 初等基本教育과 12歲 以上의 高等基本教育에 關한 一切費用은 國
家가 負擔하고 義務로 施行함.

다. 學齡이 超過되고 初等 或 高等의 基本教育을 받지 못한 人民에게 一律로 免費補習 教育

을 施行하고 貧寒한 子弟로 衣食을 自備하지 못하는 者는 國家에서 代供함.

라. 地方의 人口 交通 文化 經濟 等 情形을 따라 一定한 均衡的 比例로 教育機關을 設施하되 最低限度 每 1邑 1面에 5個 小學과 2個 中學 每 1郡 1道에 2個 專門學校 每 1道에 1個 大學을 設置함.

마. 教科書의 編輯과 印刷發行을 國營으로 하고 學生에게 無料로 分給함.

바. 國民兵과 常備兵의 基本知識에 關한 教育은 專門訓練으로 하는 以外에 每中等學校와 專門學校의 必須科目으로 함.

사. 公私立學校는 一律로 國家의 監督을 받고 國家에 規定한 教育政策을 遵守하되 韓僑의 教育에 對하여 國家로써 教育政策을 推進함.

그리고 마지막에 綜合的으로 臨時政府 27年 동안의 歷代 議政院議長과 閣僚名單 및 大韓民國元年(1909年)과 大韓民國 24年(1942年) 現在의 政府機構表를 參考로 添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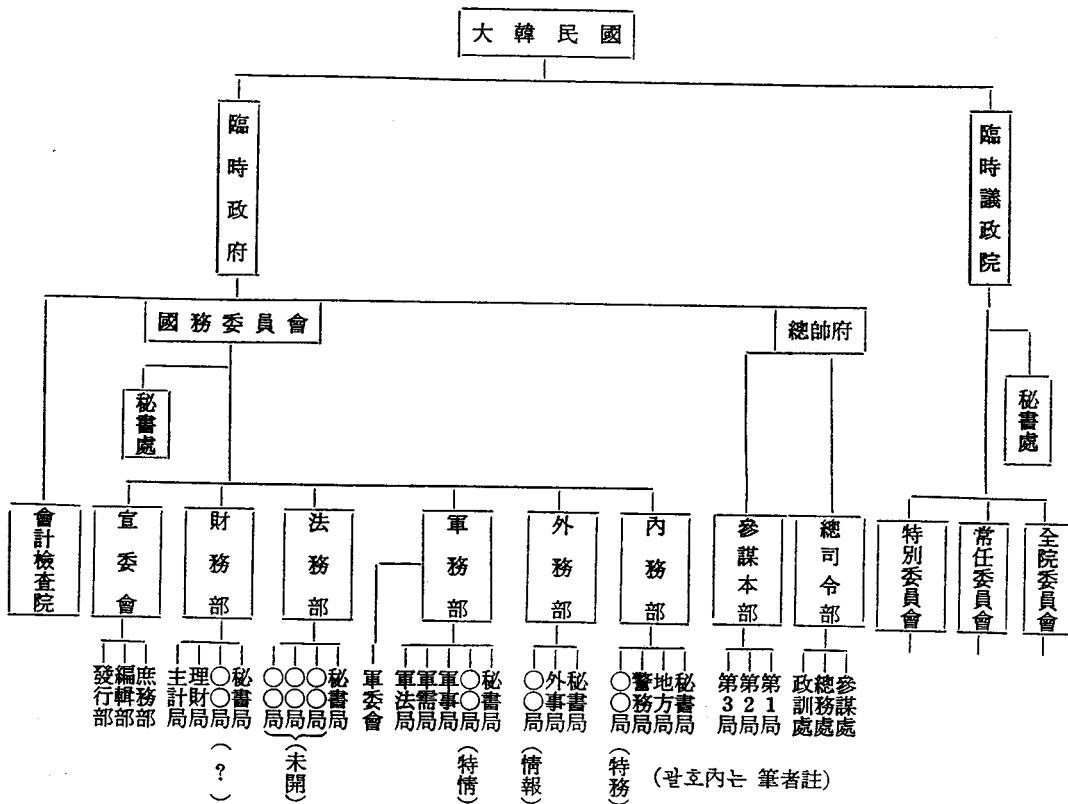
大韓民國臨時議政院 及 臨時政府 歷代一覽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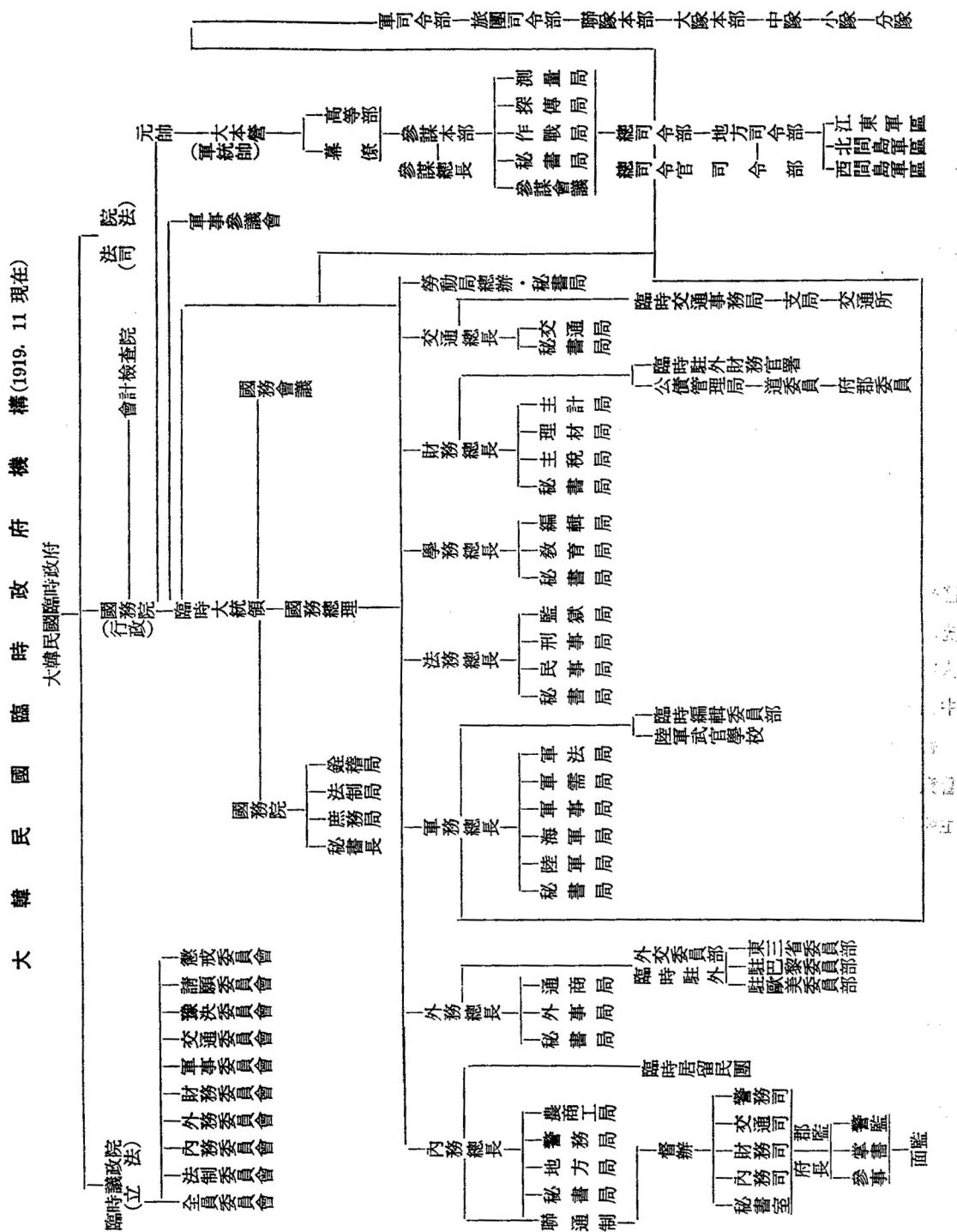
議政院歷代議長 臨時政府	歷代閣員			
	第1屆	第2屆	第3屆	第4屆
	國務總理制	大統領制	同上	同上
1 李 東 寤	國務總理 李承晚	大統領 李承晚	大統領 李承晚	大統領 李承晚
2 孫 貞 道	內務總長 安昌浩	國務總理 李東輝	國務總理 盧伯麟	國務總理 李東輝
3 洪 震 震	外務總長 金奎植	同代理 申圭植	內務總長 金九	內務總長 金九
4 金 仁 全	軍務總長 李東輝	內務總長 李東輝	外務總長 趙素昂	外務總長 趙素昂
5 趙 素 昂	法務總長 李始榮	外務總長 朴容萬	軍務總長 柳東說	軍務總長 盧伯麟
6 張 琦 鵬	財務總長 崔在亨	軍務總長 盧伯麟	財務總長 李始榮	財務總長 李始榮
7 尹 琦 變	交通總長 文昌範	財務總長 李始榮	法務總長 洪震	勞動總辦 趙琬九
8 趙 尚 變		法務總長 金奎植	學務總長 曹成煥	
9 吕 運 亨		交通總長 文昌範	交通總長 李汎	
10 崔 昌 植		勞動總辦 安昌浩	勞動總長 金東三	
11 李 東 東				
12 李 東 刚				
13 李 東 寤				
14 宋 秉 祥				
15 金 明 濟				
16 宋 秉 祥				
17 洪 震 震				
18 洪 震 震				
19 洪 震 震				
自 民國元年 至 同24年 1919—1942	自 元年 4月 至 同年 9月 1919—1919	自 元年 9月 至 4年 8月 1919—1922	自 4年 9月 至 6年 4月 1922—1924	自 6年 5月 至 同年12月 1924—1924

歷代閣員							
第5屆	第6屆	第7屆	第8屆	第9屆	第10屆		
大統領制	同上	國務領制	同上	同上	國務委員制		
大統領	李承晚	大統領	朴殷植	國務領	李相龍	國務領	洪震
國務總理	朴殷植	國務總理	盧伯麟	國務員	李沾	國務員	趙素昂
內務總長	李裕弼	內務總長	李裕弼	同	金東三	同	趙尚燮
財務總長	李圭洪	外務總長	李圭洪	同	吳東振	同	李裕弼
法務總長	吳永善	軍務總長	盧伯麟	同	尹世暉	同	金應燮
學務總長	趙尚燮	法務總長	吳永善	同	玄天默	同	吳永善
勞動總辦	金甲大	財務總長	李圭洪	同	尹秉庸	同	金甲
		交通總長	趙尚燮	同	金佐鎮		
				同	曹成煥		
				同	李裕弼		
自6年12月 至7年3月 1924—1925	自7年3月 至7年7月 1925—1925	自7年7月 至8年2月 1925—1926	自8年7月 至8年12月 1926—1926	自8年12月 至9年4月 1926—1927	自9年11月 至14年11月 1927—1932		

歷代閣員						第 16 屆					
第 11 屆		第 12 屆		第 13 屆		第 14 屆		第 15 屆		第 16 屆	
國務委員制		同上		同上		同上		主席制		主副席制	
國務委員	宋秉祚	國務委員	梁起鐸	國務委員	李東寧	國務委員	李東寧	主席	金九	主席	金九
同	曹成煥	同	宋秉祚	同	金九	同	金九	國務委員	趙琬九	副主席	金奎植
同	金奎植	同	趙素昂	同	李始榮	同	李始榮	內務部長	趙素昂	國務委員	趙素昂
同	李承晚	同	曹成煥	同	曹成煥	同	曹成煥	國務委員	趙素昂	外務部長	國務委員
同	尹琦燮	同	金奎植	同	宋秉祚	同	柳東說	國務委員	曹成煥	軍務部長	金若山
同	崔東旿	同	尹琦燮	同	趙琬九	同	宋秉祚	國務委員	朴贊翊	國務委員	趙琬九
同	車東錫	同	柳東說	同	車利錫	同	洪震	國務委員	李始榮	財務部長	車利錫
同	申翼熙	同	崔東旿	同	車利錫	同	趙琬九	法務部長	車利錫	國務委員	李始榮
			車利錫		金澈	同	車利錫	國務委員		國秘書長	曹成煥
			金澈		成周寔	同	趙素昂	財務部長		國秘書長	黃學秀
						同	李青天	國務委員		國秘書長	張建相
								內務部長	申翼熙	同	趙擎韓
								法務部長	崔東旿	同	柳林成
								文化部長	崔錫淳	同	周寔金朋濬
									(金尚德)	同	星淑
								宣傳部長	嚴恒燮	同	朴贊翊
自	14年11月	自	15年10月	自	17年10月	自	21年11月	自	22年10月	自	26年3月
至	15年3月	至	17年10月	至	21年10月	至	22年10月	至	24年	至	(解放)
1932—1933		1933—1935		1935—1939		1939—1940		1940—1942		1944—1945	

大韓民國臨時議政院 及 臨時政府 系統表(1942現在)





第二章 初期의 警察組織

正式政府가 아닌 海外에 새운 臨時政府의 警察이란 領土高權이 缺如되기 때문에 法的인 效力を 못가짐은 當然한 일이다. 더우기 裁判權이 亡命地(嚴格히 所在地)에 있기 때문에 司法警察權이란 到底히 있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臨時政府의 警察이란 社會團體의 監察機關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公然의 狀況가운데 우리 臨時政府는 大韓民國元年 11月 「大韓民國臨時官制」를 制定하여 內務部에 警務局을 두고 警務局長下에 警護部長과 警護員을 두었다. 그리고 12月에는 聯通制(地方制度에 該當 嚴格히 國內各地方의 連絡制度)로 道에는 警務司(局같은 것)를 두고 道와 各府·郡에는 警監을 두어 警察·衛生事務에 從事케 하고 그 下에 警護員을 두게 하였다.

一 内務總長

大韓民國元年 9月의 統合憲法에 依하면 臨時大統領은 「臨時大統領은 國家를 代表하고 政務를 總攬하며 法律을 公布함」(A. 11)이라 되어 있고 「大韓民國臨時官制」에 依하면 國務總理는 「大統領 總攬下에서 國務院首班으로 行政事務의 統一을 保持함」(A.)이라 하여 韓末의 議政府議政大臣과 같은 規定이며 各部總長及 勞働局總辦의 命令이나 處分이 틀렸다고 認定했을 때 이를 中止시킬 수 있음(國務院과 其所管章 A. 2) 他政府組織의 常例이다.

警察의 最高官廳으로서의 内務總長에 對한 規定은 「內務總長은 憲政籌備 議員選舉 地方自治 警察 衛生 農商工務와 宗教 慈善에 關한 一切事務를 統轄함」(內務部節 A. 1)이라 하야 警察 衛生에 關한 最高官廳임을 規定하고 있다.

二 警務局一分局

1. 警務局

警察의 最高官廳인 内務總長의 補佐機構로서 内務部에 秘書局 地方局 및 農商工局(이것은 未開設)과 함께 警務局이 있는데 警務局의 所管事務는 (1) 行政警察 (2) 高等警察 (3) 圖書出版及 著作權 (4) 一切 衛生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司法警察事項이 없는 것은 亦是 司法權이 臨政 所在地로 말하면 佛蘭西 領事館所管이고 더 넓게는 中國政府나 其他 僑胞所在地에 있기 때문임이 自明한 것이다. 그리고 韓國人은 國際法의 으로 日本國籍이기 때문에 日本領事裁判權에 屬해 있는 것이다.

大韓民國臨時官制 (大韓民國元年 11月 5日 國務院)

法律公布

本臨時大統領은 臨時議政院의 決議와 大韓民國 臨時官制를 臨時憲法 第1章 第15條에 依하여 此를 公布함.

臨時大統領 李 承 晚

大韓民國元年 11月 5日

國務總理 李 東 輝
內務總長 李 東 寧
外務總長 朴 容 萬
軍務總長 盧 伯 麟
法務總長 申 圭 植
學務總長 金 奎 植
財務總長 李 始 榮
交通總長 文 昌 範
勞動局總辦 安 昌 浩

法律第2號

大韓民國臨時官制抄

第1章 臨時大統領의 直轄機關

(第1節 大本營)

(第2節 參謀部)

(第3節 軍事參議會)

第2章 國務院과 其所管

第1節 國務院

第1條 國務總理는 臨時大統領의 總攬下에서 國務院首班으로 行政事務의 統一을 保持함.

第2條 國務總理는 各部總長 及 勞動局總辦의 命令 或 處分이 前條規定에 違碍됨을 認할 時는 此를 中止케 하고 國務會議에 提出하여 決定함.

(第2節 庶務局)

(第3節 法制局)

(第4節 銓稽局)

第3章 各 部

第1節 通 則

第1條 本則은 內務·外務·軍務·法務·學務·財務·交通 及 勞動局에 適用함.

第2條 各部에는 總長 1人을 勞動局에는 總辦 1人을 置해야 主管事務의 責任을 負함.

第3條 各總長 及 勞動局總辦은 主管事務에 關하야 職權 또는 特別委任에 依하여 部令을 發함 을 得하며 地方長의 命令 及 處分이 法令에 違反되고 職權에 違越한 者로 認할 時는 此를 停

止 또는 消함을 得함.

第4條 各部總長 及 勞動局總辦은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하며 書記以下 職員의 進退를 專行함.

第5條 各部總長이 有故할 時는 次長이 代理함.

.....

.....

第8條 各部는 左開職員을 置함.

次 長 1人

局 長 人

參 事 人

書 記 人

第2節 內 務 部

第1條 內務總長은 憲政籌備 議員選舉 地方自治 警察 衛生 農商工務와 宗教 慈善에 關한 一切 事務를 統轄함.

第2條 內務部에는 秘書 地方 警察 農商工의 4局을 置함.

... ...

... ...

第5條 警察局은 左開事務를 掌握함.

1. 行政警察에 關한 事項
2. 高等警察에 關한 事項
3. 圖書出版 及 著作權에 關한 事項
4. 一切 衛生에 關한 事項

... ...

(第3節 外 務 部)

(第4節 軍 務 部)

(第5節 法 務 部)

(第6節 學 務 部)

(第7節 財 務 部)

(第8節 交 通 部)

臨時政府 警察의 實質的인 機能은 「白凡 逸志」에 依하면 “警務局의 任務는 既成國家에서 하는 普通 警察行政이 아니요 倭의 偵探의 活動을 防止하고 獨立運動者가倭에게 投降하는 것을 監視하며倭의 魔手가 어느 方面으로 들어오는가를 監視하는 데 있다”라 하였으며 이를 為하여 “正服과 私服의 警護員 20餘名을 썼다” 그리하여 “虹口의倭領事館과 對立하여 暗鬪”하는 것이 警務局의 任務였던 것이다.

2. 分 局

警務局은 우리 韓僑가 多數 居住하거나 來往이 자진 곳에 分局을 둔 것 같아. 1921年11月14日字의 日帝報告에 依하면 天津에 臨時政府의 警務分局이 곧 設置되어 分局長과 局員 數名을 두어 警察事務에 專掌하리라는 情報와 分局長에는 朴世勲이 推選되었다고 한다(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Ⅱ 479面). 그리고 11月8日字의 報告는 前記 天津 韓民會長인 朴淵熙가 內定되었다고 하여(朴世勲과 朴淵熙는 同人인듯) 그 警務局長이 天津에 오리라는 消息을 傳하고 있다(金正明同書 484面).

3. 人 事

初代警務局長에는 後에 臨時政府 主席이 된 金九가 就任하여 5年間 勤務하였다하여 民國 2年2月末 現在의 內務職員으로 다음과 같이 警護部長과 警護員의 名單이 보인다.

民國2年2月末 現在

內 務 部(上海 康寧里3號)

總 長	李 東 辉
次 長	李 圭 洪
參 事	鄭 濟 亨
同	崔 東 昽
同	李 鐘 郁
書 記	鄭 海 晃
同	朴 仁 國
同	趙 德 津
同	尹 宗 植
<警 務 局>	
局 長	金 龜
警護部長	呂 淳 根
警 護 員	朴 鍾 益
同	崔 進 錫
同	田 在 淳
同	金 濟 俊
同	車 均 敏
同	莊 源 泽
同	金 永 濟
同	黃 亨 殷
同	朴 亨 國

4. 生活補助

臨時政府에서 「薪水費」라는 臨時生活補助費支給規程(1920年 11月18日)이 있는데 警察關係의

毎日 薪水費는 다음과 같다.

總長 銀 80圓

局長 銀 50圓

警護員 銀 25圓

敎令 第12號

臨時職員補助費規程

第1條 本政府職員에 當分間 薪水費를 支給함

第2條 薪水費는 左表에 依하여 每月 支給함

1. 大統領	銀150元
2. 國務總理	銀100元
3. 總長 及 總辨	銀 80元
4. 國務院秘書長(法制局 及 各部□長)	銀 65元
5. 局長	銀 50元
6. 秘書 及 參事	銀 35元
7. 書記 及 警護員	銀 25元
8. 屬人	銀 自 25元 至 15元

第3條 一個人이 數個 官職을 兼任할 時 最高官職 薪水費를 支給함

第4條 薪水費는 每月 23日에 支給함

第5條 叙任 及 解任은 在職日數가 5個日 以上 15個日 以內에 在한 者에게는 半額을 支給함.

第6條 在職中 職務에 因하여 患難을 被하거나 又는 疾病에 罷하여 多大한 醫治를 要하는 者에 對하여는 主管長官은 其 情狀에 依하여 小銀 100元 以內의 限度에서 特히 需費를 的量 支給함을 得함

第7條 一時 或은 永久한 特設機關의 職員에 對하여는 此를 別定함

第8條 本規程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5. 服制

大韓民國 2年11月18日

그리고 警護員의 服制로는 「양쪽 가슴에 주머니를 단 더불 詰襟」을 着用하였다고 한다(新東亞 1967年 2月號 499—500面)

<附> 「白凡逸志」警察關係記事 (括弧內는 筆者 註)

3·1運動이 일어난 뒤에 各地로 부터 모여온 人士들이 臨時政府와 臨時議政院을 組織하여 中外에 宣布한 것이 4月初旬이었다. 이에 誕生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首班은 國務總理 李承晚博士 그 밑에 內務·外務·財務·法務·交通 等 部署가 있어 光復運動의 여러 先輩首領을 그 總長에 推戴하였다. 總長들이 原地에 있어서 就任치 못하므로 青年들을 次長으로 任命하야 總長을

代理케 하였다. 내가 内務總長 安昌浩先生에게 政府 門把守를 請願한 것이 이때였다.

나는 門把守를 請願한 것이 警察局長으로 就任하게 되니 以後 5年間 審問官 判事 檢事의 職務와 死刑執行까지 혼자 兼하여서 하게 되었다. 왜 그런고하면 그때 犯罪者의 處罰이 說諭放送(釋放)이 아니면 死刑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金道淳이라는 17歲의 少年이 本國에 特派되었던 臨時政府特派員의 뒤를 따라 上海에 와서 倭領事館에 買收되어 그 特派員을 잡는 앞자비가 되려고 돈 10圓을 받은 罪로 未成年者임에도 不拘하고 極刑에 處한 것은 既成國家에서는 보지 못할 일이었다.

내가 맡은 警察局의 任務는 既成國家에서 하는 普通 警察行政이 아니요 倭의 偵探의 活動을 防止하고 獨立運動者가倭에게 投降하는 것을 監視하며倭의 魔手가 어느 方面으로 들어오는가 를 監視하는 데 있다. 이 일을 하기 為하여 나는 正服과 私服의 警護員 20餘名을 썼다. 이로써 虹口의倭領事館과 對立하여 暗鬪하는 것이다.

當時 프랑스租界當局은 우리의 國情을 잘 알므로 日本領事館에서 우리同胞의 逮捕를 要求해 오는 때에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避하게 한 뒤에 日本警官을 帶同하고 빈 집을 搜查할 뿐 이었다.

倭仇 田中義一이 上海에 왔을 때에 黃浦碼頭에서 吳成倫이 그에게 爆彈을 던졌으나 爆發되지 아니하므로 拳銃을 쏜 것이 田中은 아니 맞고 美國人女子 한 명이 맞아 죽은 事件이 났을 때에 日本·英國·法國(佛國) 세 나라가 合作하야 法(佛)租界의 韓人을 大舉 搜索한 일이 있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님이 本國으로부터 上海에 오신 때였다. 하루는 이른 새벽에倭警官 일곱놈이 프랑스警官 서대납(西大納)을 앞세우고 내 寢室에 들어 왔다. 서대납은 나와 잘 아는 者라 나를 보더니 웃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倭警官이 나를 結縛하라는 것을 禁하였다. 프랑스 警察廳에 가니 元世勲等 다섯 사람이 벌써 잡혀 와 있었다. 프랑스當局은倭警官이 우리를 審問하는 것으로 许치 아니하고倭領事館에 넘기라는 것도 아니 듣고 나로하여금 다섯 사람을 擔保케 한 後에 才 나아울려 모두 釋放해 버렸다.

우리同胞關係 일에는 내가 政臨時府를 代表하여 언제나陪審官이 되어 프랑스租界的 法廷에 출廷하였으므로 現行犯이 아닌 以上 내가 擔保하면 釋放하는 것이었다.倭警察이 나와 프랑스當局과의 關係를 안 뒤로는 다시는 내 逮捕를 프랑스當局에 要求하는 일이 없고 法(佛)租界밖으로 誘引해 내라는手段을 쓰므로 나는 한 거름도租界 밖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5年間 警務局長을 하는 동안에 생긴 奇異한 일은一一히 적을 수도 없고 또 이로다 記憶도 못하거나와 그 中에 몇 가지를 말하련다.

(倭)高等偵探 鮮于 甲을 잡았을 때에 그는 죽을 罪를 깨닫고死刑를 自願하기로 장공贖罪를 할 誓約을 받고 살려 주었더니나 나흘만에 逃亡하여 本國으로 들어갔다.

康麟佑는倭警部로 上海에 와서 總督府에서 받아가지고 온 使命을 말하고 내게 거짓 報告資料를 달라하기로 그리하였더니 本國에 돌아가서 그 功으로 豊山郡守가 되었다.

舊韓國 内務大臣 東畏 金嘉鎮先生이 3·1宣言後에倭에게 받았던 男爵을 버리고 大同黨을 組織

하여活動하다가 아들 懿漢君을 데리고 上海에 왔을적 일이다. 倭는 男爵이 獨立運動에 參加하였다는 것이 耻辱라 하여 懿漢의 妻의 徒兄 정필화를 보내어 東畏先生을 歸國케 할 運動을 하고 있음을 探知하고 정가를 檢舉하야 審問한 즉 날날이 自白하므로 處統하였다.

黃鶴善은 海州 사람으로 3·1運動 以前에 上海에 온 者인데 가장 우리 運動에 热心히 있는 듯 하기로 他處에서 오는 志士들을 그 집에 留宿케 하였더니 그 者가 이것을 奇貨로 하여 一邊倭領事館과 通하야 거기서 돈을 얻어쓰고 一邊愛國青年에게 臨時政府를 惡宣傳하야 羅昌憲(後の 警務局長) 金懿漢 等十數名이 作黨하야 臨時政府를 襲擊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것은 곧 鎮壓되고 犯人은 全部 警察局의 손에 逮捕되었다가 그들이 黃鶴善의 謀略에 속은 것이 分明하므로 모두 說識하야 放送(釋放)하고 그때에 重傷한 羅昌憲·김귀제는 入院시켜 治療를 받게 하였다.

이 事件을 調査한 結果 黃鶴善이가倭領事館에서 資金과 指令를 받아 우리 政府各總長과 警察局長을 殺害할 計劃으로(그의 사위) 羅昌憲이 京城醫專의 學生이던 것을 利用하여 3層洋屋을 貰를 내어 病院看板을 붙이고 總長들과 나를 그리로 誘引하야 殺害할 計劃이던 것이 判明되었다. 나는 이 間招의 記錄을 羅昌憲에게 보였더니 그는 펄펄 뛰며 속은 것을 自白하고 丈人 黃鶴善을 死刑에 處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黃鶴善은 벌써 處統된 뒤였다. 나는 羅·金等이 全然 惡意가 없고 黃의 謀略에 속은 것이라고 判斷하였다.

한 번은 朴某라는 青年이 警務局長面會를 請하기로 만났다. 그는 나를 對하자 곧 落淚하며 短銃 한 자루와 手帖 하나를 내 앞에 내어 놓으며 自己는 數日前에 本國으로부터 上海에 왔는데倭領事館에서 그의 體格이 健壯함을 보고 金九를 죽이라 하고 成功하면 돈도 많이 주려니와 設使失敗하여 그가 죽는 境遇에는 그의 家族에게는 나라에서 좋은 土地를 주어 平安히 살도록 할 터이라고, 萬一 이에 應치 아니하면 그를 「不逞鮮人」으로 嚴罰한다 하기로 不得已 그러마 하고 武器를 法(佛)租界로 들어와 길에서 나를 보기도 하였으나 獨立을 為하야 애쓰는 사람을 自己도 大韓사람이면서 어찌 敢히 傷하랴 하는 마음이 生겨서 그 短銃과 手帖을 내게 바치고 自己는 邊地方으로 달아나서 장사나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感謝하다는 말을 하고 놓아 보내었다.

나는 「疑心하는 사람이거든 쓰지를 말고, 쓰는 사람이거든 疑心을 말라」는 것을 信條로 하여 살아 왔거니와 그 때문에 失敗한 일도 없지 아니하였으니 韓泰圭 事件이 그 예다.

韓泰圭는 平壤사람으로서 매우 勤實하여 내가 7·8年을 부리는 동안에 內外國人の 信任을 얻었었다. 내가 警務局長을 辭免한 後에도 그는 如前히 警務局 일을 보고 있었다.

하루는 桂園盧伯麟兄이 아침 일찍 내집에 와서 뒤 路邊에 韓服입은 젊은 女子의 尸體가 있다하기로 나가 본즉 그것은 明珠의 尸體였다.

明珠는 上海에 온 後로 鄭仁果·黃錫南이 빌어 가지고 있는 집에 食母로도 있었고 젊은 사내들과 醉行도 있다는 所聞이 있던 女子다. 어느날 밤에 한 번 韩泰圭가 이 女子를 同伴하고 가는 것을 보고 韩君도 젊은 사람이니 그러나보다 하고 지나친 것이 얼마 오래지 아니한 것이 記憶

되었다.

屍體를 檢查하니 被殺이 分明하다. 머리에 피가 묻었으니 처음에는 빼린 模樣이오 목에는 바로 매었던 자국이 있는데 그 手法이 내가 西大門監獄에서 活貧黨 金進士에게 배운 것을 警護員들에게 가르쳐 준 그것이었다. 여기서 端緒를 얻어 가지고 調査한 結果 그 犯人이 韓泰圭인 것 이 判明되어 그 프랑스警察에게 말하여 그를 逮捕케 하여 내가 陪審官으로 그의 問招를 듣건데 그는 내가 警務局長을 辭職한 後로부터 여러가지 事情으로 倭에게 買收되어 그 密偵이 되어 明珠와 秘密히 通氣하던 中明珠가 韩이 密偵인 눈치를 알게 되매 韩은明珠가 自己의 일을 내게 密告할 것을 怯내어서 죽인 것이라는 것을 自白하였다.

明珠는 行實이 不正할 當證 愛國心은 热烈한 女子였다. 그는 終身懲役의 刑을 받았다. 後에 나와 同貫(同鄉)이던 羅愚도 韩泰圭가 돈을 흔히 쓰는 것을 보아 오래 疑心은 하였으나 確的한 證據도 없이 내가 그런 말을 告하면 내가 同志를 疑心한다고 責妄할 것을 두려워해야 말을 아나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後에 韩泰圭는 다른 罪囚들을煽動하야 陽曆 1月1일에 獄을 깨트리고 逃亡하기로 約束을 하여 놓고 제가 도로혀 監獄當局에 密告하야 看守들이 擔銃하고 警備하게 한 後에 約束한 時間이 되매 여러 監房門이 一齊히 열리며 칼·몽둥이·돌멩이·재 같은 것을 가지고 罪囚들이 뛰어 나오는 것을 韩泰圭가 銃을 놓아 罪囚 8名을 卽死케 하니 다른 罪囚들은 怯을 내어 움직이지 못하며 이 破獄騷動이 鎮定되었다. 그리고 이 事件을 裁判하는 마당에 韩泰圭는 제가 쓰아 죽인 여덟 名의 屍體를 담은 棺머리에 證人으로 出廷하는데 말을 들었고 그 後에 韩의 便紙를 받았는데 그는 그같은 罪囚 여덟 名을 죽인 것이 큰 功勞라 하여 放免이 되었고 前에 잘못한 것은 다 悔改하니 다시 써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듣건데 이 便紙에 對한 내 回答이 없는 것을 보고 怯이 나서 本國으로 逃亡하여 무수 조고마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가 이런 凶惡한 놈을 絶對로 信任한 것이 다시 世上에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서 甚히 苦悶하였다. (白凡逸志 下篇 271—279面)

三 聯通制(地方制)의 警察配置

臨時政府는 本土가 비록 敵에게 빼앗겼다 하더라도 地方制度가 있어야 하고 臨時政策의 連絡과 宣傳 等에 從事할 機關과 또한 政府財政의 必要性에서 더욱 이것이 必要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民國元年 7月 10日 統合政府가 서기 前의 上海臨政에서는 聯通制를 國務令 第1號로 發布하였으며 이는 統合政府가 선 後 12月 1일에 教令 第2號로 改正되었다.

聯通制는 全國 13道를 그대로 道로 定하고 道에는 地方長으로 督辦을 두어 補佐機構로는 秘書室·內務司·財務司·交通司 및 警務司를 두도록 하였으며, 司長은 道參事로서 補하고 그 밑에 掌書·警監·技手 및 通譯을 두었다. 府·郡에는 府長과 郡監을 長으로 하여 參事·掌書·警監을 두었다.

그러니까 督辦과 府長·郡監은 警察官廳이고 警監과 그 下級職으로 警護員(A. 20)이 警察衛生事務를 補佐·執行하는 것이다(A. 10 및 18).

道의 警務司를 包含한 各司의 事務分掌規程은 內務總長이 이를 定하도록 되어 있다(A. 7).

聯通制의 實質的 目的是 占領된 本國의 國民들에게 獨立意識을 잊지 않게 하고 또한 獨立運動資金을 育출하고 最終目的으로는 一大反抗運動을 일으킬 수 있을가 하는 데 있다.

聯通制와 함께 可及的 各郡에 交通局, 各面에 交通所를 두기로 하고 于先 國境江岸一帶에 이를 設置하였으며, 新義州 對岸의 安東에서는 交通支部를 두어 國內와의 交通·通信機關으로 삼았다. 그리고 內務部特派員을 各地에 派遣하여 特殊連絡事項을 傳達케 하고 各地方 調查員을 두어서 地方事情을 調査·把握케 하였다.

聯通制는 約 半年 동안에 慶尙南北道와 江原道를 除外한 10道에 組織되었었는데 郡監까지 任命된 곳은 咸北·咸南·平北·平南, 黃海·京畿·忠北의 7道였다.

聯通制의 實際的 組織은 上下系統은 서로 알되 橫的으로는 서로 모르게 하였는데 民國元年(1919) 9月에 咸北·會寧 地方機關이 敵에게 탄로나서 崔枋衍 等 10名이 有罪判決로 獄苦를 치렀으며, 民國二年(1920) 8月에는 咸興의 聯通機關이 敵에게 탄로나자 이로 말미암아 京畿道와 平安南·北道의 커다란 組織이 드러나 金麟瑞 等 50名이 有罪判決을 받았는데 이때 逮捕된 많은 사람들은 敵의 總督府 官吏·學生·傳道師 等의 有識層이 많아 世人을 놀라게 하였다. 이때 「聯通制 7條目」이란 것이 公判審問中에 드러났다.

다음에 聯通制條文과 그 全國組織中 警察關係의 名單만 抄出한다.

臨時地方 聯通制(改正 教 令 第 2 號) (大韓民國 元年 12 月 1日)

第1條 地方에 左의 道를 둔다

京畿道·忠淸北道·忠淸南道·全羅北道·全羅南道·慶尙北道·慶尙南道·平安南道·平安北道
江原道·咸鏡南道·咸鏡北道

道의 位置及 管轄區域은 內部總長이 이를 定한다

第2條 各道에 左의 職員을 둔다

督 辦	1人
參 事	4人
掌 書	若干人
警 監	2人
技 手	若干人
通 譯	若干人

第3條 督辦은 內務總長에 隸屬하며 各部의 主務에 關하여는 各部總長의 指揮監督을 받아서 法令을 執行하고 管內의 行政事務를 管理하여 所屬官吏를 指揮監督한다.

第4條 督辦은 管內의 行政事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委任의 範圍내에서 道令을 發行할 수 있다

道令을 發하였을 時는 遷滯敘이 主務總長에게 其 要旨를 報告할 것

第5條 督辦은 府長 또는 郡監의 命令 또는 處分이 法規에 違背하는가 또는 職權을 넘었다고
認定할 時는 其 命令 또는 處分을 取消 또는 停止할 수가 있다

第6條 督辦이 事故있을 時는 內務司長인 參事が 其 職務를 代理한다.

第7條 各道에 秘書室 內務司 財務司 交通司 及 警務司를 둔다.

秘書室 及 各司의 事務分掌規程은 內務總長이 이를 定한다.

第8條 司長은 道參事로써 이에 充當한다. 司長은 督辦의 命을 받아서 司務를 掌理하며 部下
를 指揮監督한다.

第9條 掌書는 擔任事務에 從事한다.

第10條 警監은 警察 及 衛生事務에 從事한다.

第11條 技手는 技術에 從事한다.

第12條 通譯은 通辦 及 麵譯에 從事한다.

第13條 道에 府 及 郡을 둔다.

府 及 郡의 名稱 位置 管轄區域 及 處務規程은 內務總長이 이를 定한다.

第14條 各府郡에 左의 職員을 둔다.

府長 또는 郡監 1人

參 事 1人

掌 書 若干人

警 監 1人

第15條 府長 또는 郡監은 督辦의 指揮監督을 받아서 法令을 執行하고 管內 行政事務를 掌理하
며 部下의 官吏를 指揮監督한다.

府長 또는 郡監이 事故있을 時는 府郡參事가 其 織務를 代理한다.

第16條 府郡參事는 府長 또는 郡監의 命을 받아서 府郡事務를 掌理하며 部下官吏를 指揮監督
한다.

第17條 掌書는 擔任事務에 從事한다.

第18條 警監은 警察 及 衛生事務에 從事한다.

第19條 各府郡의 須要에 依하여 技手級 通譯을 둘 수가 있다.

第20條 道 及 府郡에 通信員 及 警護員 若干名을 둔다.

第21條 通譯員 及 警護員에 關한 規程은 內務總長이 이를 한다.

第22條 各道 及 各府郡에 參議를 둘 수 있다. 參議는 各道에 7人 每郡에 5人으로 한다. 參議는
道府郡管轄 區域內에 居住하는 學識 名望있는 者로써 內務總長이 이를 任命한다.

第23條 道 及 府郡의 參議는 督辦府長 또는 郡監의 諮問에 應하여 또는 臨時命令한 事務에 從
事한다.

第24條 各郡에 面을 둔다.

面의 名稱 及 區域은 内務總長이 이를 한다.

第25條 面에 面監을 둔다.

第26條 面監은 郡監의 指揮監督을 받아 面內의 行政事務를 補助 執行한다.

第27條 面에 助手 若干人을 둔다.

第28條 助手는 郡監이 이를 任한다.

第29條 助手는 面監의 指揮監督을 받아 擔任事務에 從事한다.

第30條 面에 協議員을 둘 수 있다.

協議員은 每面에 3人으로 한다.

第31條 協議員은 面內의 居住하는 信望있는 者로써 督辦이 이를 任命한다.

第32條 協議員은 面監의 諮問에 應하는 것으로 한다.

第33條 道府 郡參議 及 協議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第34條 道府 郡參議 及 協議員에는 内務總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서 職務執行에 要하는 費用을
給與할 수 있다.

附 則

本令은 大韓民國 元年 12月 5일부터 이를 施行함

聯 通 制 名 單(地方長官 警察關係官)

1. 道 關 係

黃海道 督辦	崔錫浩
警務司	金基瀅
平安北道 督辦	安秉瓊 (初代 趙秉準)
警務司	申彥甲 (自 2年 1月12日~至 3年 9月21日) 呂淳根
咸鏡南道 督辦	韓永鎬 (初代 尹和洙)
警務司	洪基鎮
警監	朴源八
咸鏡北道 督辦	吳重默
警監	崔枋重
平安南道 督辦	李德煥
忠清北道 督辦	李鎔
京畿道 督辦	閔哲勲
全羅北道 督辦	李石峴
全羅南道 督辦	奇東衍
墾北南部 總辦	具春先 (區域) 延吉·和龍·敦化·額穆
墾北北部 總辦	徐一 (區域) 旺清·琿春·東寧·寧安·穆稜

2. 郡關係

咸鏡南道

咸鏡北道

甲	泰	燦	龜	準	鉉	燦	鍾	俊	海	秀	烈	珍	鑄	協
熙	珽	時	燦	昌	基	商	貞	承	賢	昌	鴻	相	文	
吳	金	金	梁	金	韓	康	李	元	柳	姜	金	陳	李	金
監	監	監	監	監	監	監	監	監	監	監	監	監	監	監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川	昌	川	興	興	源	源	平	興	原	寶	城	興		
宣	厚	熙	威	永	德	洪	定	新	利	會	鏡	慶		

第三章 末期의 警察組織

民國 26年 4月 「主一副主席制憲法」이 通過施行되자, 5月 25日 政府組織이 改正되었다(이것은 翌年 4月 11일에 追認案을 臨時議政院에 提出하였다).

이에 依하면 行政府의 最高機關으로 「國務委員會」가 있고 그 아래 各部의 長官과 國務委員會主席으로 構成되는 「行政聯席會議」가 있으며, 行政 各部에는 內務·外務·軍務·法務·財務·文化 및 宣傳의 7부가 있고, 그 外에 委員會를 들 수 있다. 그리고 各部에는 部長이 있고, 그 밑에 次長·秘書·科長 및 科員의 職員을 두었으며 事務分掌을 為하여 「科」(局該當)와 特種委員會를 두었다.

警察은 內務部에 屬하며 內務部에 警察科가 内局으로 警察事務를 補助하였음은 前者와 같다.

一. 內務部長

行政 各部의 長의 名稱은 初期에는 總長으로 불리던 것인데 洪 震 國務領이 組閣했을 때는 內務長이니 法務長이라고 했다가 主主席制憲法 때부터 「部長」으로 改稱하였다. 그러나 主一副主席制憲法이 採用되면서 國務委員을 各部 部長이나 參謀總長·檢查院長보다 上格으로 하고 國務委員은 下級職을 兼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1921年以來 不和했던 左翼을 包攝하여 臨時政府가 左右合作으로 構成되어, 감투 配分의 必要上 擴張된 結果인 것이다. 그리하여 各部의 部長은 原則上 國務委員보다 下級이었다(實地에 있어서 이때 內務部長이 된 申翼熙는 國務委員이 아니었다).

內務部長이 警察의 最高官廳임은 變動이 없었다. 內務部長은 憲政籌備·議員選舉·地方施設·交通·農商工務·宗教·賑恤·救濟 및 人民團體에 關한 一切 事務와 함께 警察 衛生에 關한 事務를 統轄하도록 되어 있다(後添 官制 A. 49).

二. 警務科 및 警衛隊

內務部에 總務科·民政科(地方局該當)와 함께 「警務科」가 內務部長의 警察事務를 補助함은 從前의 警務局과 다름이 없다. 警務科의 管掌事務는 다음과 같다(A. 53)

1. 一切 警察에 關한 事項
2. 秩序·紀律에 關한 事項
3. 國務 及 人口調查에 關한 事項
4. 徵兵 及 徵發에 關한 事項

5. 國內情報 及 敵情蒐集에 關한 事項

그리고 따로이 「警衛隊」를 두었는데 그 規則은 「警衛隊條例」를 따로 둔다고 하였다(A. 54). 이때의 内務部長이 申翼熙이고 警務科長은 李志一, 警衛隊長도 李志一이 兼했다.

다음에 改正된 官制와 이에 따라 作成한 政府組織機構表 및 警察關係 名單을 싣는다.

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

第1章 臨時委員會

第1條 國務委員會는 大韓民國臨時憲章 第29條에 依하여 國務委員會主席 及 國務委員으로 組織하여 國務會議로써 國務를 議決하고 政務를 統轄함.

第2條 國務會議에는 行政各部會 首長이 列席하여 所管政務에 對하여 報告하여 意見을 陳述함.

第3條 國務會議는 必要한 境遇에 軍事長官 或 其他 負責人員을 列席시키어 意見을 陳述케 함.

第4條 主席은 法律·命令을 公布할 時에 國務委員의 副署로 하되 各部會에 專屬할 時는 各該部會 首長의 副署로 함.

第5條 國務會議의 詳細規程은 此를 別定함.

第6條 國務委員會에는 秘書處 及 主席辦公室과 庶務局을 置함

第7條 秘書處에서는 左列事項을 掌理함

1. 國務會議 記錄編存에 關한 事項

2. 法令發布 及 原本保存에 關한 事項

3. 文電收發에 關한 事項

4. 印信管守에 關한 事項

5. 國務委員會 會計에 關한 事項

6. 公報刊行에 關한 事項

7. 其他 機要에 關한 事項

第8條 秘書處에서는 秘書長 副秘書長 各 1人과 秘書 書記 各 若干人을 置함

第9條 秘書長은 主席의 命을 承하여 所管事務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監督함

第10條 副秘書長은 秘書長을 補佐하여 處務를 整理하며 秘書長이 有故할 時에 그 事務를 代理함

第11條 秘書는 上官의 命을 承하여 機要事務에 從事함

第12條 書記는 上官의 命을 承하여 事務에 從事함

第13條 主席辦公室에서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主席의 函電收發編存에 關한 事項

2. 印信管守에 關한 事項

3. 主席의 隨從 及 應酬에 關한 事項

4. 調查統計에 關한 事項

5. 本室 會計에 關한 事項

第14條 主席辦公室에는主任 1人 秘書 書記 各 若干人을 置함

第15條主任은主席의 命을 承하여 所管事務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監督함

第16條秘書는主任을 補佐하여 室務를 整理하고主任이 有故할 時에 그 事務를 代理함

第17條 書記는 上官의 命을 承하여 事務에 從事함

第18條 庶務局에서는 左列事項을 掌理함

1. 典禮儀式에 關한 事項

2. 印刷 印鑄에 關한 事項

3. 廳舍 及 器具管理에 關한 事項

4. 本局 會計에 關한 事項

5. 其他 一切 庶務에 關한 事項

第19條 庶務局에는 局長 1人과 局員若干人을 置함

第20條 局長은主席의 命을 承하여 所管事務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監督함

第21條 局員은上官의 命을 承하여 事務에 從事함

第 2 章 行政聯席會議

第22條 行政聯席會議는 大韓民國臨時憲章 第40條에 依하여 行政各部層의 首長으로 組織하고 國務委員會主席이 此를 主持함

第23條 行政聯席에서 討議한 重要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한 後에 施行함

第24條 行政聯席會議의 詳細規程은 此를 另定함

第 3 章 統帥府

第25條 大韓民國臨時政府統帥府는 軍事의 最高統帥權을 有함

第26條 統帥府에는 臨時政府國務委員會主席이 統帥가 되어 그 職權을 行使함

第27條 統帥府에는 參謀總長 及 軍務部長과 國務委員中 1人이 幕僚의 主席이 되어 帷幄의 機密을 運營하되 作戰의 計劃을 作成하여 此를 實行함

第28條 統帥府에는 幕僚 及 機關의 高等部를 置하되 그 編制는 另定함

但 爲先統帥府의 日常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統帥府辦公處를 置하고主任 1人과 委員 2人을 置하여 文書 會計 庶務 等 事務를 分掌케 함

第 4 章 參謀部

第29條 參謀部는 國務 及 用兵에 關한 一切 計劃을 統辦함

第30條 參謀部는 總長 1人 次長 1人 參謀若干人으로 組織함

第31條 參謀部의 詳細規定은 此를 另定함

第5章 會計檢查院

第32條 會計檢查院은 國家의 一切 會計를 檢查 監督함

第33條 會計檢查院은 院長 1人 檢查委員 若干人 助理員 若干人을 置함

第34條 會計檢查院 院長 及 檢查委員은 他官職을 兼任함을 不得함

第35條 會計檢查院의 詳細規程은 此를 另定함

第6章 行政各部會

第1節 通 則

第36條 本通則은 內務·外務·軍務·法務·財務·文化·宣傳 等 各部와 其他 設置되는 各委員會에 通用함

第37條 各部會에는 部長 或 委員長 各1人을 置하여 各該 主管事務에 關하여 全責을 負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臨38條 各部 部長 或 各委員會 委員長은 主管事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委任에 依하여 部令 或 會令을 發하여 地方首長의 命令 及 處分이 不當하거나 或은 職權을 遷越하므로 認할 時는 此를 停止 或 取消함을 得함

臨39條 各部 部長 或 各委員會 委員長이 有故할 時는 次長 或 副委員長이 그 事務를 代理함

1. 境遇에 依하여 國務委員會의 決議를 그 代理人을 選派兼攝列 함도 得함

第40條 各部會에는 總務科를 置하여 左列事務를 掌理함

1. 機密에 關한 事項
2. 職員進退 身分에 關한 事項
3. 印信管守에 關한 事項
4. 文電收發 及 謄錄編存에 關한 事項
5. 統計調查 及 報告에 關한 事項
6. 會計 및 庶務에 關한 事項
7. 直屬公有財產 及 物品에 關한 事項
8. 他科에 屬치 아니한 事項

第41條 各部會의 事務를 分掌되 為하여 各科 或 特種委員會를 置하되 所管事務는 各部會官制에 此를 規程함

但 時宜에 臨하여 國務會決로 增減 或 裁併함을 得함

第42條 各部會에 左列職員을 置함

次長 或 副委員長 1人

秘 書 若干人

科 長 若干人

科 員 若干人

- 第43條 次長 或 副委員長은 部長 或 委員長을 補助하여 事務를 整理하며 所屬職員을 監督함
第44條 秘書는 上官의 命을 承하여 機要任務에 從事함
第45條 科長은 上官의 命을 承하여 科務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監督함
第46條 科員은 上官의 命을 承하여 事務에 從事함
第47條 各種委員會는 各該 部會의 首長이 當然 主任委員이 되어 會務를 主幹함
第48條 各 特種委員會에 副主任委員 1人을 置하여 主任委員을 補佐하며 會務를 整理함

第2節 內務部

- 第49條 內務部長은 憲政籌備 議員選舉 地方施設 警察 衛生 交通 農商工務 宗教 賑恤救濟 及 人民團體에 關한 一切事務를 統轄함
第50條 內務部에는 總務 民政 警政 各科와 警衛隊를 置함
第51條 總務科는 通則에 依함
第52條 民政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憲政籌備 及 議員選舉에 關한 事項
 2. 地方機關 及 行政區域 設廢에 關한 事項
 3. 農商工務에 關한 事項
 4. 賑恤 及 救濟에 關한 事項
 5. 宗教 及 人民團體에 關한 事項
 6. 交通에 關한 事項
- 第53條 警務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一切警察에 關한 事項
 2. 秩序紀律에 關한 事項
 3. 國務 及 人口調查에 關한 事項
 4. 徵兵 及 徵發에 關한 事項
 5. 國內情報 及 敵情蒐集에 關한 事項
- 第54條 警衛隊는 警衛隊條例에 依함

第3節 外務部

- 第55條 外務部長은 外交政務 及 國際交涉의 施行과 外僑事宜를 統轄하고 外交官 及 外交機關을 指揮 監督함
第56條 外務部는 總務 外事 情報 各科와 外交研究委員會를 置함
第57條 總務科는 通則에 依함
第58條 外事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外交機密에 關한 事項
2. 外交官 及 領事에 關한 事項
3. 外人賞恤에 關한 事項
4. 條約 通信 航海 及 移民에 關한 事項
5. 其他 外人에 涉及되는 事項

第59條 情報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國際情報蒐集에 關한 事項
2. 外交策略宣傳에 關한 事項
3. 中外新聞稿件選撰譯에 關한 事項
4. 中外報界聯絡에 關한 事項

第60條 外交研究委員會는 該 委員會條例에 依함

第 4 節 軍務部

第61條 軍務部長은 陸海空軍 軍政에 關한 事務를 統轄하며 陸海空軍 軍人 軍屬을 管理하고 所管 各官署를 監督함

第62條 軍務部에는 總務 軍事 軍需 軍法 各科 及 空軍設計委員會와 軍事學編纂委員會를 置함

第63條 總務科는 通則에 依함

第64條 軍事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陸海空軍編制 及 平時 戰時 編制와 戒嚴 演習 及 檢閱에 關한 事項
2. 團隊配置 及 戰時法規 軍紀 儀式 服制에 關한 事項
3. 各軍 飛行隊에 關한 事項
4. 艦政 及 海上保安과 通輸通信에 關한 事項
5. 各軍 衛生 醫政에 關한 事項
6. 各種 軍武 官任免 及 補充에 關한 事項
7. 各種 軍籍 及 戰時名簿와 成績表에 關한 事項
8. 各種 軍兵員募集에 關한 事項
9. 賞功 恩給 褒獎 及 紿暇에 關한 事項
10. 各軍 留學生 及 學校에 關한 事項
11. 軍政情報에 關한 事項

第65條 軍需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兵器 及 器材에 關한 事項
2. 被服 · 粮秣 · 馬匹 及 物品에 關한 事項
3. 軍資運用 經理 及 研究審議에 關한 事項
4. 建築 及 廢物處分에 關한 事項
5. 軍需幹部 教育養成에 關한 事項

第66條 軍法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軍事法規에 關한 事項
2. 各種 軍監獄에 關한 事項
3. 軍人審判 及 監獄職員 人事에 關한 事項
4. 軍法會議에 關한 事項

第67條 空軍設計委員會 及 軍事學編纂委員會는 各該 委員會條例에 依함

第 5 節 法務部

第68條 法務部長은 各種 審判機關 及 監獄을 監督하고 民事 刑事 及 其他 司法 行政事務를 統轄함

第69條 法務部에는 總務 司法 各科와 法規編纂委員會를 置함

第70條 總務科는 總則에 依함

第71條 司法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審判機關設置 及 管轄區域에 關한 事項
2. 民事 及 刑事事件에 關한 事項
3. 故免 減刑 復權 及 刑罰執行에 關한 事項
4. 國際交付罪犯에 關한 事項
5. 監獄에 關한 事項

第72條 法規編纂委員會規程은 此를 另定함

第 6 節 財務部

第73條 財務部長은 會計 出納 租稅 國債 貨幣 及 銀行에 關한 一切 財政事務를 統轄하고 必要가 有한 時는 駐外財務官을 派遣하여 海外에 在한 一切 本國 財政問題와 募債事宜를 掌理함을 得함

第74條 財務部에는 總務 主稅 理財 主計 各科를 置함

第75條 總務科는 通則에 依함

第76條 主稅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國稅賦課 徵收에 關한 事項
2. 租稅 以外 諸收入에 關한 事項

第77條 理財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資金運用에 關한 事項
2. 國庫出納에 關한 事項
3. 貨幣에 關한 事項
4. 金庫監督에 關한 事項

5. 金融 及 國債에 關한 事項

第78條 主計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預算 決算에 關한 事項
2. 國庫主計 簿記에 關한 事項
3. 歲出入統計書에 關한 事項
4. 統一會計에 關한 事項

第 7 節 文化部

第79條 文化 教育 及 學藝에 關한 一切 事務를 統轄함

第80條 文化部에는 總務 教育 各科를 置함

第81條 總務科는 通則에 依함

第82條 教育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一般學校教育에 關한 事項
2. 海外留學生에 關한 事項
3. 教育費補助 及 褒賞에 關한 事項
4. 各級 教材用圖書의 編纂 發行 調查 及 檢定에 關한 事項
5. 民族文化發揚에 關한 事項

第 8 節 宣傳部

第83條 宣傳部長은 一切 對內外 宣傳事宜를 統轄함

第84條 宣傳部에는 總務 宣傳 資料 各科와 編輯委員會를 置함

第85條 總務科는 通則에 依함

第86條 宣傳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各種 宣傳에 關한 事項
2. 演講 及 廣播에 關한 事項
3. 演劇 及 圖書에 關한 事項

第87條 資料科는 左列事務를 掌理함

1. 調査統計에 關한 事項
2. 通信宣傳에 關한 事項
3. 一切 材料蒐集에 關한 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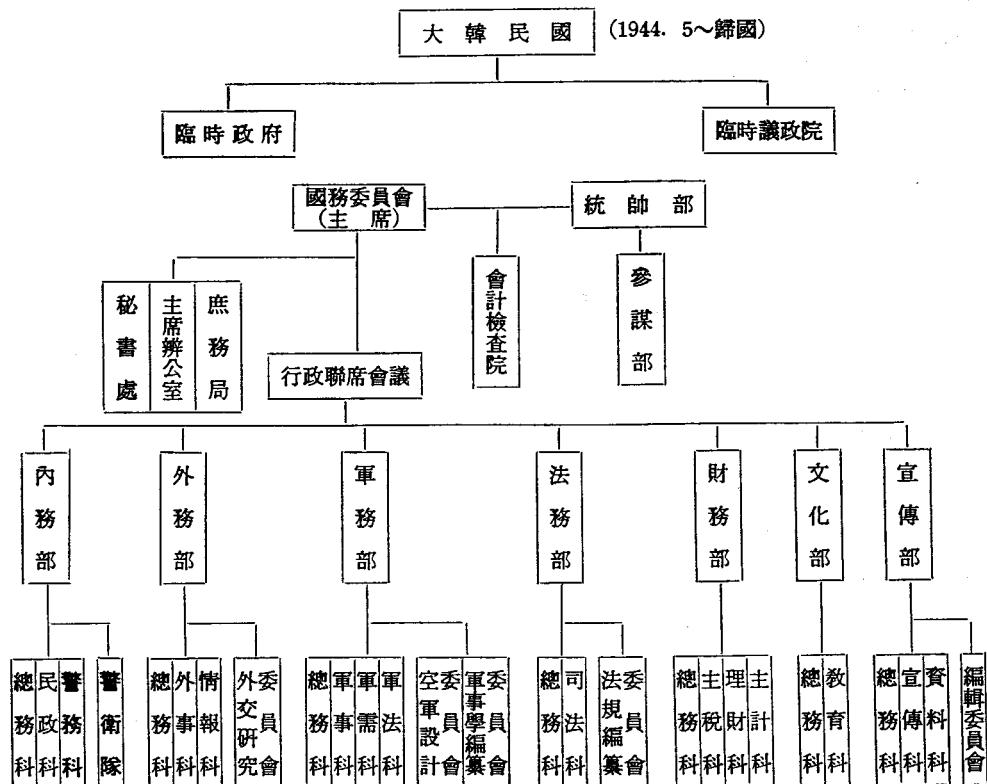
第88條 編輯委員會規程은 此를 另定함

第 9 節 各委員會

第89條 各委員會의 詳細規程은 그 設置를 隨하여 此를 策定함

第7項 附 則

第90條 本官制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臨時政府職員選解任薄(警察關係抄)

職員	姓名	選任日字	解任日字
警務科長	李志一	民國26年5月31日	民國26年7月10日
次長	李志一(暫兼)	民國26年7月10日	民國26年10月16日
科員	文德洪	民國26年6月12日	民國27年1月22日
科員	閔泳玖	民國26年6月12日	
科員	朴英俊	民國26年6月12日	
科員	嚴東奎	民國26年1月22日	
警衛隊長	李志一	民國26年5月31日	民國26年7月10日
警衛次長	李志一(暫兼)	民國26年7月10日	民國26年10月16日
隊副	劉炳茂	民國26年6月12日	
隊員	朴龍德	民國26年6月12日	民國27年2月19日
隊員	宋福德	民國26年6月12日	
隊員	黃英式	民國26年6月12日	
隊員	沈光植	民國26年6月12日	
隊員	李圭元	民國27年2月5日	